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202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유흥주점 및 유흥접객원 실태조사 토론회

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일시 2021년 9월 30일 14:00

장소 온라인(zoom)

주최 및 주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202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유흥주점 및 유흥접객원 실태조사 토론회〉

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프 로 그 램

사회: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 제

순서	제목	발제자
1	코로나19와 유흥주점 실태 및 유흥접객원이라는 ‘일’에 대하여	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2	유흥/접대와 유흥접객원, 역사적 기원 읽기	박정미(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 론

1	유흥주점 성매매 피해 상담의 실제	김유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2	착취의 삭제를 위해	봄날(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3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한 법적 검토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유흥주점 및 유흥접객원 실태조사 토론회〉

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목 차

발제1 코로나19와 유흥주점 실태 및 유흥접객원이라는 '일'에 대하여 …… 6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발제2 유흥/접대와 유흥접객원, 역사적 기원 읽기 …… 60

박정미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1 유흥주점 성매매 피해 상담의 실제 …… 72

김유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토론2 착취의 삭제를 위해 …… 76

봄날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토론3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한 법적 검토 …… 80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코로나19와 유흥주점, 실태 및 유흥접객원이란 '일'에 대하여

- 유흥접객원 경험 여성 지원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코로나19와 유흥주점, 실태 및 유흥접객원이란 '일'에 대하여

- 유흥접객원 경험 여성 지원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2021. 09. 30.

연구 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연구책임자 : 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공동연구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상담소장 및 활동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

(사)대전여성인권 티움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사)수원여성인권 돋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희희낙락상담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목 차]

Ⅰ.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초 실태조사; 전국 유흥주점 현황 비교와 전국 상담 통계
2-1. 유흥접객원 법률 규정의 모순적 함의
2-2. 전국 유흥주점 현황
2-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전국 상담통계

Ⅱ. 지역별 유흥주점 실태
1 지역별 유흥주점 집결지 현황
1-1. 지역별 유흥주점 집결지 분포도
1-2. 지역별 주요 유흥주점 밀집지역 현장조사
2.단속과 관리 현황;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통로로서 유흥주점
2-1. 유흥주점 단속과 관리 업무 현황
2-2. 단속 조치 사례

Ⅲ. 성매매피해의 주요 원천으로서 유흥주점; 유흥접객원 삭제를 말하다
1.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업소의 유형과 일하는 방식
1-1. 일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된 주거형태
1-2. 고용 형태와 영업 방식
1-3. 테이블서비스 댓가와 지급방식
1-4. 2차(성매매)의 알선방식
2. 유흥접객원, '일'의 내용
2-1. 일의 시작; 일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비용
2-2. 구매자에게 선택받는 일 '초이스'
2-3. 기본적인 일의 내용; 테이블 서비스
2-4. 유흥접객원 '일'과 2차 성매매의 고리
2-5.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유흥접객원
3. 유흥접객원 일의 '삭제'는 필요한가/가능한가
3-1. 유흥접객원 규정과 낙인
3-2. 유흥접객원 삭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3-3. 인터뷰를 마치며;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Ⅳ. 나가며; 여성과 노동에서 '유흥접객원' 지우기

Ⅰ.들어가며

2021년 9월 25일 기사였다. 새벽 4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19살의 청소년이 역시 같은 주점의 손님이었던 27살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1]. 사건의 이면에는 더 많은 맥락이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지역의 업소가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던 중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평상시에도 유흥주점 등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늘 사건사고가 빈번했다.

유흥접객원, 또는 도우미로 불리우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의 잔혹한 살해사건에서도 살해당한 두 명의 여성은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여성이었다.[2]. 유흥접객원/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이 자주 범죄 피해자가 되고, 유흥접객원/도우미 구인광고에서처럼 고소득을 올리며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비난이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이번 실태조사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도 모두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로부터 모두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의 낙인과 차별로 인해 크게 영향 받고 있었다.

유흥접객원, 또는 도우미로 불리우는 이 직종은 유흥주점에서만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 <식품위생법>제22조에 의하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이 법조항에 의거해 룸살롱, 요정, 텐프로 들이 합법적으로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유흥업소가 비싼 세금을 내면서도 전국에 3만 여개에 이르는 규모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유흥접객원은 유흥주점 뿐 아니라 단란주점과 노래방, 티켓다방 등에서 '도우미'로 불리우며 보도방을 통해 어디든 공급되어진다. 몇 그룹씩 여성들을 나누어 들여보내 손님들이 자신을 접대할 접객원 여성을 고르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가벼운 스킨쉽에서 유사성교행위와 직접적인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 2차 성매매는 당연한 코스가 된다. 성매매피해상담소들은 이러한 유흥주점의 룸

1) 프레시안,2021.09.25., "유흥주점서 칼부림에 10대 '비명횡사'...친구 VS 20대男" 싸움말리다

2) "송파구의 한 노래방 관계자는 '강씨가 2000만원으로 송파구 일대를 다니면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유흥비로 쓰고 다닌 걸로 안다'고 했고, 또 다른 노래방 업주는 '강씨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이어서 더 안타깝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래방 도우미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범죄는 강씨 뿐만이 아니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에서 여성 7명을 납치해 살해한 강호순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3명이 노래방 도우미였으며,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살해한 피해자 21명 중 11명이 도우미나 출장안마사였다. (세계일보,2021.09.07.,"피해자에 사죄한 강윤성, 왜 노래방 도우미만 골라 살해했나.")

안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행위를 제어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해 애써왔지만 법은 고소한 여성들의 편이 아니었다. 여성들이 손님 등 여럿이 보는 앞에서 온갖 모욕과 성적 학대를 당해도 이것은 유흥접객원의 '일'로 치부되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부녀자'만을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성차별적 요소가 있으니 '부녀자'를 삭제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당시 대통령은 남성 유흥접객원은 있을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당시부터 대부분의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며 반성매매운동을 해온 단체들은 유흥접객원 조항은 이미 그 존재자체가 여성차별이며 인권침해이기에 삭제할 것을 제안해왔다. 세계 어느 곳에도 밀폐된 방에서 손님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곳은 없다. 이를 문제시 하기위해 2021년 코로나 감염이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조건에 내몰리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긴급하게나마 나누고 과연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포화상태라 할 유흥주점들이 모두 영업이 잘될 거라는 유흥업불패 신화는 개개업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산업이라는 장르를 가리킨다. 마치 그럴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여성들만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거대한 수익을 올릴 거라 얘기하지만, 그건 만만치 않은 얘기다. 그런 불패의 신화만 믿고 이 영업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실패하고 제거된다. 유흥업소로 운영되는 2부 클럽도 명멸을 거듭하고, 명성을 이어나가며 계속 돈을 잘 버는 곳은 모든 산업이 그렇듯 일부 업소들이다. 하지만 유흥업은 많은 돈을 끌어들인다. 이 시장은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코로나에도 이 노력은 눈물겹게 이어졌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수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성매매 알선업소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식품업소는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룸살롱처럼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음주가무가 허용되는 업태인 유흥주점은 2004년 2만9857개에서 2009년 3만466개로 609개(2.0%) 늘어 대조를 보인 것이다. 음주와 노래가 가능하지만 유흥종사자 고용이 불법인 '단란주점'은 2004년 1만8030개에서 2009년 1만5700개로 2330개(12.9%) 감소했다. 일부 단란주점 업자들이 유흥주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실태는 어떨까. 2021년 7월 국가공공데이터 포털의 국가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유흥주점은 약 2만 7천여 개에 이른다. 10여 년 전과 비교해 3천여 곳이 줄었으나 워낙 규모가 컸던 탓에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성매매피해상담소의 평상시 상담과 지원의 주요 내용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여성들의 관련한 피해였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로 인한 감염사태로 더욱 취약해진 여성들의 상황을 보며 유흥접객원이라는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국의 상담소들이 각 지역의 유흥주점 불법영업의 실태를 단속과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행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알아보고, 보조적 자료로 코로나19 감염사태 이후 각 지역의 유흥주점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유흥주점 등 업소들의 영업형태를 드러내기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유흥접객원/도우미로 일한 경험이 있는 내담자들에게 요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인터뷰에서는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법률로 공인된 유흥접객원, 그리고 유흥접객원/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영업형태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흥접객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통해 유흥접객원 조항의 삭제를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화 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2. 기초 실태조사; 전국 유흥주점 현황 비교와 전국 상담 통계

2-1. 유흥접객원 법률 규정의 모순적 함의

유흥접객원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대부분 '도우미'라거나 '아가씨'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흥주점 발 코로나 감염사태가 많아지면서 기사 등에서 이들을 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종사자라 칭하고 있어, 이 용어가 조금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익숙한 용어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흥주점 또한 법률 용어이지만 일상에서는 오히려 '룸살롱'이나 '가요주점'같은 명칭이 더 자주 쓰인다. 보통 무도장이라 분류되는 클럽, 회관과 더불어 유흥업소로 통칭해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노래방식 주점, 가요방식 주점이라 되어있는 간판만으로는 단란주점인지, 유흥주점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인지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기본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은 22시까지 청소년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술과 유흥접객원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부르는 '노래방'의 밀집지역도 존재했다. 세금부과에서 큰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일부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서도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영업 자체에 타격이 있다면 억울해하는 노래방 업주들도 있다.
이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부녀자로 한정되고, 유흥주점에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일명 '호스트바'라 불리는 남성유흥접객원을 두는 업소는 불법이다. 또한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도우미로 부르는 행태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유흥주점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최근 유흥주점도 고정으로 일하는 접객원을 두기보다는 보도방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공급받는 경우

가 많고, 유흥주점이 아닌 곳에서도 보도방을 통해 여성들을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이 유흥주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다. 자신이 일하는 방식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하는 유흥접객원의 내용은 단지 식품위생법에서 부녀자만을 유흥접객원으로 호명하며 차별을 가시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티켓다방의 종사자와 안마시술소의 안마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성병검사가 필요한 업종을 특정한 것이며, 국가가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에서 세금을 들여 성병검사를 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여전히 성병검사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더구나 유흥주점이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형태보다 유흥접객원/도우미를 보도방에서 부르고 있고, 더구나 그 업종이 유흥주점에 한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성병검사는 그 예방적 효과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즉 예방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성병검사를 공식화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금지와 허용이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여성들은 성매매 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성병관리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이중적 처벌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은 유흥접객원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23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 2021. 7. 19] [보건복지부령 제820호, 2021. 7. 19, 일부개정]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 043-719-79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개정 2011. 1. 3.>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3.]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개정 2021. 7. 1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2. 전국 유흥주점 현황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가장 최근의 유흥주점의 전국 수치와 각 지역별 유흥주점 밀집지역을 추출하였다. 이 수치를 기초로 하여 전국 유흥주점 밀집지역의 분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화 하였다. 특히 전국의 법정동(행정동)별 유흥주점 집결지역을 순위를 매겨 이를 정리하였다. 또 유흥주점의 전국적 수치와 그 수치가 차지하는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형 업종과 비교해 보았다.

2021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유흥주점 업소수

지역	유흥주점업소수
강원도	1379
경기도	5399
경상남도	4292
경상북도	1961
광주광역시	606
대구광역시	1266
대전광역시	257
부산광역시	2418
서울특별시	1855
세종시	36
울산광역시	1073
인천광역시	1025
전라남도	1549
전라북도	969
제주도	772
충청남도	1174
충청북도	800
주소없음	66
합계	26897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21.07.31.)

전국 유흥주점과 주요 필수 업종 업소수 비교

업종	유흥주점	통닭(치킨)	김밥	카페	제과점	중국음식
업소수	26,897	16,664	3,967	6,521	19,011	24,179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21.07.31.)

생활필수 업종도 아닌 유흥주점의 전국 업소수가 그 어떤 업종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유흥주점의 테이블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생활형 업소와는 비교 불가할 만큼 많이 든다.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술값과 테이블서비스 비용은 가장 저렴한 곳이라 해도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것도 단지 1차 서비스로 1시간 정도 유흥을 즐기는 비용이고, 시간을 연장하거나, 팁 등을 계산하면 더욱 높은 비용이 소비된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것이 등록된 유흥주점의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흥접객원/도우미를 두고 영업하는 곳은 유흥주점 외에도 대표적으로 단란주점과 노래방도 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물론 이러한 업소들은 유흥접객원을 두는 것이 불법이지만 성매매방지법 제정이전에도 이러한 업소들에 대한 규제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성을 고용하여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유흥주점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영업이익을 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유흥업협회를 중심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곳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행동에 옮기기도 하였다.
한동안 일부 지자체는 노래방과 단란주점의 불법 도우미 고용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일부 지역 유흥업협회는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노파라치'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하였다[3]. 또 유흥주점들이 단란주점을 같은 층에 동시에 영업하면서 두 업소 간의 통로를 연결하여 동시에 영업을 하며 손님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위장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많다.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도 이러한 실태는 그대로 드러났다. 2021년 6월 7일자 기사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30여 곳이 여성 도우미를 불렀으며, 이를 통한 감염이 확인되었다[4]. 코로나 감염 상황 때문에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일 뿐, 행정당국의 방임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들 업소에 지역 주민들도 무감각해지는 사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 경계 없이 유흥접객원을 부르고 2차까지 연결하는 영업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 수에 불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까지 더해진다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

3) 경기일보, 2017.06.06.,"손님 줄자...유흥vs단란주점'불법영업 공방', NSP통신,2014.11.20.,"불법 노래방 업소 협박해 금품챙긴 노파라치, 유흥업협회장 등 무더기 검거", 중부매일,2018.01.23.," 불법 판치는 노래연습장'범죄의 온상'".
4) 뉴시스, 2021.06.07.,"청주 노래방 도우미 불법 영업에 손실 보상금 수억원 '줄줄'"

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유흥주점과 유흥주점 유사 업종들의 영업의 폐해가 클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부정적 영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전국 상담통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는 서울과 제주 등 전국 11곳에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있다. 이들 상담소의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 상황이었던 2019년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상담 건수와 유흥주점 상담건수를 비교하였다. 이 표의 상담건수와 실 인원 비교를 통해 가장 주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흥주점 관련한 내용이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주요 상담과 지원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즉 성매매 피해가 일어나는 주요 업종이 유흥주점이고, 성매매 피해 여성 중 많은 수가 유흥접객원/도우미를 경험한다. 유흥주점이 합법적 영업형태이지만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유흥접객원 일의 내용이 이미 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것을 용인하고, 성적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인지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법률에 의거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성매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에 종속된다.

2019~2020.05 성매매피해 총상담건수와 유흥주점 상담건수 비교표

상담소(지역)	기간 *2021년은 1월~5월	총상담건수 (실인원)	유흥주점관련 상담건수 (실인원)	유흥주점관련 상담비율*반올림
총 계	2019~2021	53724(3887)	26166(1386)	49%(36%)
보다(서울)	2019	1462(323)	276(59)	19%(18%)
	2020	2143(253)	138(14)	6%(6%)
	2021	816(90)	43(16)	5%(18%)
	총계	4421(666)	26,442(89)	9%(13%)
강강술래(인천)	2019	2536(124)	482(32)	19%(26%)
	2020	3066(98)	541(22)	18%(22%)
	2021	1692(136)	485(20)	29%(29%)
	총계	7294(358)	1508(74)	21%(21%)
수원	2019	1,406(97)	628(37)	44%(38%)
	2020	1,383(85)	614(30)	44%(35%)
	2021	440(42)	176(15)	40%(35%)
	총계	3229(224)	1418(82)	43%(36%)
느티나무(대전)	2019	1536(208)	683(104)	44%(50%)
	2020	1461(157)	766(73)	52%(46%)
	2021	744(94)	267(35)	36%(37%)
	총계	3741(459)	1716(212)	46%(46%)
전북여성인권	2019	1857(132)	537(48)	29%(36%)

센터 부설 상담소(전주)	2020	2154(128)	696(36)	32%(28%)
	2021	825(84)	139(20)	17%(24%)
	총계	4836(243)	1371(79)	28%(33%)
언니네(광주)	2019	2346(167)	688(52)	30%(31%)
	2020	2397(134)	1276(46)	53%(34%)
	2021	821(68)	450(34)	55%(50%)
	총계	5564(369)	2414(132)	43%(36%)
목포	2019	1190(76)	653(19)	55%(25%)
	2020	1315(71)	498(29)	38%(41%)
	2021	652(47)	188(12)	29%(26%)
	총계	3157(194)	1339(60)	42%(30%)
힘내(대구)	2019	1,675(201)	736(101)	44%(50%)
	2020	1,687(256)	620(74)	37%(29%)
	2021	957(149)	326(42)	34%(28%)
	총계	4318(606)	1682(217)	39%(36%)
살림(부산)	2019	3424(151)	1843(96)	54%(64%)
	2020	2824(137)	2149(98)	76%(72%)
	2021	2059(109)	1485(78)	72%(72%)
	총계	8307(397)	5477(272)	66%(69%)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창원)	2019	2308(89)	1159(46)	50%(52%)
	2020	2236(72)	1117(41)	50%(57%)
	2021	684(44)	352(24)	51%(55%)
	총계	5228(205)	2628(111)	50%(54%)
해냄(제주)	2019	1756(76)	656(22)	38%(29%)
	2020	1265(60)	779(20)	62%(34%)
	2021	608(30)	536(16)	89%(54%)
	총계	3629(166)	1971(58)	55%(35%)

▶성매매피해 상담 건수에서 유흥주점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총계에서약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실인원에서는 36%로 거의 내담자의 3명중 1명이 유흥주점경험 여성으로, 유흥주점관련 상담이 절대적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 상담소별로도 전체 상담건수에서 유흥주점 관련 피해상담이 50%에서 30%를 차지하는 상담소가 11상담소 중 9개소이다. 성매매 알선 유형에서 유흥주점 관련한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유흥주점이 증가일로에서 약간의 정체와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흥주점의 접대문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기업의 회식문화 등이 조금씩 이를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유흥주점의 지역별 업소수가 지나치게 팽창하여 포화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더구나 조사기간은 코로나19로 더욱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그럼에도 유흥주점관련 상담은 여전히 성매매피해 상담의 대표적 알선유형이라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대다수 여론은 성매매집결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당시에도 성매매알선의 주요 유형은 유흥주

점이었다. 즉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유흥주점은 합법영업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해왔고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다.

▶유흥주점 관련 상담의 경우 실 인원 대비 상담건수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극단적으로는 광주상담소의 경우처럼 실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인데 비해 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거의 전체 상담의 절반에 가깝다[5].

이는 유흥주점관련 내담자들의 피해가 매우 복합적이고, 특히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흥주점의 경우 실제 업주와 중간 관리자의 분리가 세분화 되어 있어 성매매 알선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보도방을 통한 여성들의 공급으로 선불금 등과 관련한 지급과 성매매를 위한 일수 등 사채의 사용 등이 매우 다변화 되어 있다. 이는 여성들의 통제와 관리가 다단계적 알선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탈성매매 이후 알선자 등 관련인들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또 합법적 영업임을 내세워 주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성매매 행위 등의 불법성을 입증하거나, 2차 성매매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흥주점 고객과 여성간의 사적 관계나 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흥주점관련 피해 지원은 유흥주점 구조 자체를 문제시하고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상담건수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상담소 중 조사기간 내 지역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집결지여성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서울, 대구, 인천은 상대적으로 유흥주점관련 상담비율이 낮다. 이는 집결지 폐쇄를 위한 사업기간 동안 자활지원을 위한 상담에 주력하면서 타 상담 지원의 집중도가 많이 낮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전통형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상담건수는 상담소 상담건수와도 별도 계산되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활지원사업 진행기간 동안 그 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성매매집결지 상담의 책임상담원 뿐 아니라 상담소장과 상담원 전원이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에 많은 할애를 할 수 밖에 없다. 폐쇄과정에서의 자활지원상담은 긴급하고도 기한을 정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상담건수와 실인원에서 거의 전체 상담의 절반을 유흥주점 관련한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창원의 경우는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유흥주점 수치를 보면 이해가능하다[6].

---

5)"광주가 유흥주점 실인원 대비 상담건수가 특히 많았던 이유는 이 기간 여성 1명당 고소한 업소수가 여러개이고 피고소인수도 10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 상담 건수가 비현실적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피고소인들이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역고소하여 이에 대응하는 건수도 만만치 않게 많았던 때문입니다. 유흥주점 관련 상담과 지원은 유흥주점 알선업자들이 지역내 차지하는 위상과 권력을 이용하며, 특히 합법적 업소라는 점 때문에 늘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영 광주상담소장)

6) "풀쌀롱 업주를 고소했는데, 고소당한 후에 바지사장 앞세워 다른 업소를 개소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부동산계약서가 명백히 허위임에도 바지사장이 본인이 실업주라고 거짓 증언을 한 끝에 재판정에서는 이에 책임을 물어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법정구속 당했던 업주가 보석으로 풀려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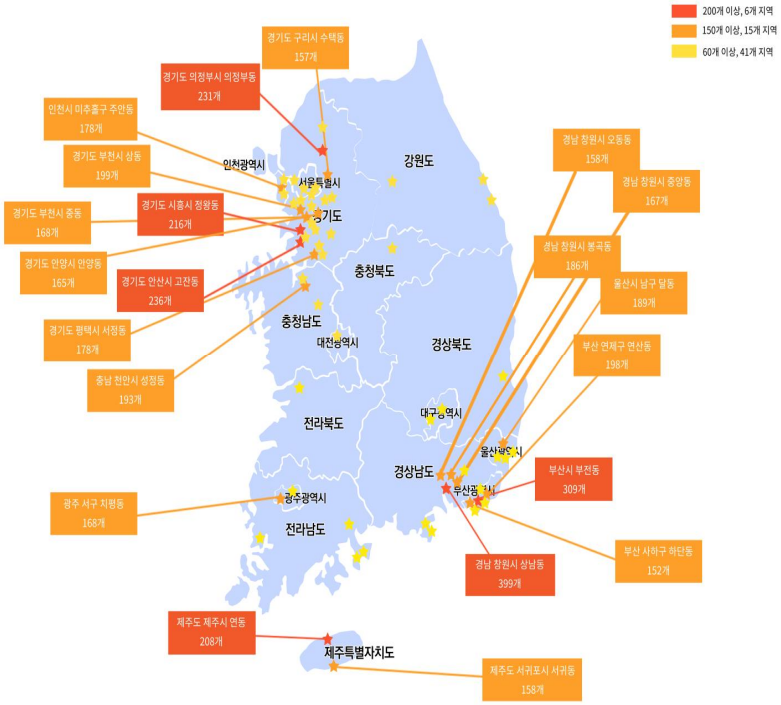

60개 이상 지역 상세내용

순위	지역명	유흥주점 개수
22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8
2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8
24	전남 여수시 학동	148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5
26	부산 사상구 괘법동	141
27	울산 동구 전하동	133
28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33
29	울산 남구 삼산동	131
30	경남 거제시 고현	130
31	경남 김해시 대청동	126
32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123
33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23
34	전남 순천시 조례동	122
35	대구 동구 신천동	116
36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115
37	경남 거제시 옥포	115
38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2
39	부산 중구 부평동	111
40	울산 남구 신정동	108
41	전남 여수시 여서동	104
42	충남 아산시 온천동	103
43	경북 포항시 죽도동	98
4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97
45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97
46	서울 강동구 길동	96
47	광주 광산구 쌍암동	88
48	서울 강서구 화곡동	87
49	전남 목포시 상동	87
50	충북 청주시 율암동	86
51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86
52	서울 강남 역삼동	80
53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79
54	대전 유성구 봉명동	78
55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76
56	전북 군산 나운동	76
57	충북 충주시 연수동	76
58	대구 달서구 이곡동	74
59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68
60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68
61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66
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5
63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	61
64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60

물론 유흥주점의 수치가 바로 상담지원의 숫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흥주점 피해 상담이 몰리는 때에 이 피해에 연결된 여성들의 상담 지원 요청이 이어지게 된다. 유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뢰를 갖게 된 상담소를 찾게 되는 경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Ⅱ. 지역별 유흥주점 실태

1 지역별 유흥주점 집결지 현황

1-1. 지역별 유흥주점 집결지 분포도

2021년 7월 현재 지역별 유흥주점 집결지 중 200개 이상이 있는 6개 지역과 200개 미만 150개 이상이 있는 15개 지역을 지도에 수치를 표시하였고, 150개 미만 60곳 이상이 있는 41개의 지역은 지도에는 별표로 표시하고, 수치와 순위를 별도 표로 정리하였다.

이후 업주가 자살하였는데 이후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악의적 소문과 공격이 이어졌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 죽음에 이르는 여성들의 수가 많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죽은 여성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데 반해 업주들의 죽음에는 과도하게 억울함과 동정론이 비등해지곤 한다. 명백히 죽음에도 위계와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다."(김유순 창원 상담소장)

순위	지역명	유흥주점 개수
1	경남 창원시 상남동	399
2	부산 진구 부전동	309
3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236
4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1
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
6	제주도 제주시 연동	208
7	경기도 부천시 상동	199
8	부산 연제구 연산동	198
9	충남 천안시 성정동	193
10	울산 남구 달동	189
11	경남 창원시 봉곡동	186
12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178
13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78
14	경기도 부천시 중동	168
15	광주 서구 치평동	168
16	경남 창원시 중앙동	167
17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65
18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58
19	경남 창원시 오동동	158
2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57
21	부산 사하구 하단동	152
22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8
2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8
24	전남 여수시 학동	148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5
26	부산 사상구 괘법동	141
27	울산 동구 전하동	133
28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33
29	울산 남구 삼산동	131
30	경남 거제시 고현	130
31	경남 김해시 대청동	126
32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123
33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23
34	전남 순천시 조례동	122
35	대구 동구 신천동	116
36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115
37	경남 거제시 옥포	115
38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2
39	부산 중구 부평동	111
40	울산 남구 신정동	108

41	전남 여수시 여서동	104
42	충남 아산시 온천동	103
43	경북 포항시 죽도동	98
4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97
45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97
46	서울 강동구 길동	96
47	광주 광산동 쌍암동	88
48	서울 강서구 화곡동	87
49	전남 목포시 상동	87
50	충북 청주시 용암동	86
51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86
52	서울 강남 역삼동	80
53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79
54	대전 유성구 봉명동	78
55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76
56	전북 군산 나운동	76
57	충북 충주시 연수동	76
58	대구 달서구 이곡동	74
59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68
60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68
61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66
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5
63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	61
64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60

유흥주점 집결지의 지역별 구분은 가장 작은 단위인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두 개 이상의 동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유흥집결지의 수치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일 수 있고, 순위 또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동별로만 구분하였을 때도 전국의 유흥주점 집결지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으며, 또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유흥주점이 가장 많은 곳을 강남 지역을 떠올리게 되는데 순위 상으로는 타 지역보다, 또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남지역에서는 부동산 임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형 업소를 중심으로 유흥주점 집결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업소 수는 적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 면에서는 결코 영향력에서는 결코 순위를 말할 수 없다. 유명연예인을 관리자로 두고, 경찰총장급과 같은 거대 권력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았던 '버닝썬'사건[7]을 기억할 것이다. 버닝썬은 춤을 출수

7) 한국일보,2021.09.15.,", '버닝썬 경찰총장'윤규근, 벌금2000만원 확정", 세계일보,2019.03.21., "'버닝썬만의 문제 아냐'...마약부터 청소년 성매매까지".

있는 무도형 유흥주점이었다. 강남의 유흥주점 관련 기사들은 늘 대형사건들 속에 있었다.

1-2. 지역별 주요 유흥주점 밀집지역 현장조사

성매매피해상담소들은 지역의 유흥주점 집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전히 성매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상시적으로 성매매알선 전단지가 뿌려지고, 불법 입간판 등 성차별과 인종차별 적 홍보물들이 게시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와 고발조치 등을 통해 시정해 왔다.

지역별 주요 지역 현장조사 내용(2020. 01 ~ 2021. 05)

권역	지역	현장 특징	관련사진
서울	강남구	간판이 확인되지 않는 곳 다수, 건물 내 지하에 업소가 위치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강북구	수유역을 중심으로 먹자골목~강북구청~7번출구까지 밀집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이 혼재돼있음	
수원	인계동	• '아가씨 항시 대기', '북창동식 노래방'과 같은 문구를 통해 성매매 알선가능 업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홍보 • 2017년에 외국인 여성들의 유입 증가가 특징적, 러시아 클럽이 생기기 시작했고 외국인 여성 2인 이상이 남성과 한 조를 이루어 업소를 홍보하고 불법 전단을 배포 • 보도방의 증가로 보도 차량통행 증가를 파악 • 한 건물에 업소들이 밀집 되어있는 전경을 볼 수 있, 건물의 위 층에 대부분 모텔이 있음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 인천시청과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학교가 많음. • 간석오거리역을 중심으로 룸, (다국적)노래클럽, 유흥업소가 매우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모텔과 룸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도 많음. • 유흥주점 밀집지역 건너편의 일방통행길은 방석집이 위치해있고 이곳도 식당가를 비롯하여 성인PC방, 모텔 등이 다수 위치함. •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업소가 많은 편임.(다국적 노래클럽, 중국/베트남 등 외국 마사지) • 5층 이상의 건물 내에 클럽,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등의 유흥업소가 위치한 형태로 한 건물에서 1차 식사부터 성매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임.	
	미추홀구	• 속칭 '주안역 2030 거리', '석바위 카페거리로 불리는 곳임. • 지역 바깥은 소위 식사를 할 수 있는 1차 업소(일반음식점, 호프 등)가 밀집되어 있으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유흥업소와 모텔이 밀집되어 있음 • '아가씨 항시 대기'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가 버젓이 걸려있는 2차 업소가 밀집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석바위의 경우, 백악관 관광나이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노래방(유흥주점 등록)/바/(다국적)노래타운·클럽 등이 밀집해 있으며 업소 외부에 노골적인 홍보문구와 여성 그림의 시트지가 붙어 있는 업소가 대부분이며 인도 곳곳에 현금인출기도 자주 확인됨	

창원	상남동	• 상남상업지구는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산업형 성매매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이유로 대규모 상가의 건설 허가가 가능,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단위 모텔이 건설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성매매가 한 지역 내,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한 특이한 형태를 띠게 됨 • 학교, 학원, 주택 밀집지역에 인근해 있으면서 지역내 전통형 집결지보다 더 큰 산업형 성매매 구역 형성 • 대부분 보도방을 통한 여성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	신제주	• 최대 유흥지역, 보도방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 여성들의 국적(북한이탈주민, 러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과 배경이 다양 • 1~2부 장사로 밤 12시까지 유흥주점(1부)을 하다가 이후 시간이 되면 호스트바(2부)로 영업을 함.	
	서귀포시	• 유흥주점 집결지로 여성들 나이대가 젊은 편 • 고정과 보도의 비율이 7:3 • 업주가 단란과 유흥을 같이 영업하면서 필요시 손님이 몰리는 업소로 여성들을 이동하게 함 • 한 업소에 2차 나가는 여성과 2차 나가지 않는 여성이 구분되어 있음	

목포	상동	• 업소에 고용되어 상시적으로 일하는 일명 '고정 아가씨'들이 대부분이며. 한 업소에 많게는 20명부터 적게는 4~5명 정도의 여성들이 상주해 있음 • 명절. 크리스마스, 인근 조선소의 월급날 등은 '고정 아가씨'로는 부족하여 업소와 거래하는 보도방을 이용 • 상동 일대의 유흥주점에서 상주하는 남성들은 '작업조''관리조'로 불리며 여성들을 유입시키는 초기 작업을 하는 남성들을 '작업조', 업소의 여성들을 출퇴근 시켜주거나 여성들이 업소에서 탈출했을 때 잡는 역할을 하는 남성들을 '관리조'라고 부름 • 작업조와 관리조의 그루밍 형태의 친분을 이용한 관리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음	
대구	수성구	• 업소의 규모가 큰 편으로 비즈니스클럽이라고 명시한 곳 다수, 고급 유흥주점이 많음 • 업소 밀집지역으로 한건물에 다수의 업소가 있거나 모텔이 있는 경우 많음 • 단란주점 포함 방문대상지 120곳 중 41곳 재개발로 철거됨었고,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등 재개발 중에 있어 많은 업소들이 없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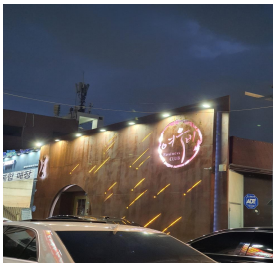
대전	유성구	• 봉명동 일대 온천·숙박 시설과 편의·위락 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유흥지역이 형성 • 업소와 100여개의 보도 사무실에 속해 있는 여성의 수를 추산했을 때 약 1,500명이 될것이라 추정	

부산	부산진구	• 부산진구에서 부전동과 전포동 일대를 부르는 서면은 행정 명칭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임 • '서면로터리'로 상징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가가 워낙 많아서 유흥주점이 업소수가 많음에도 흩어져 있는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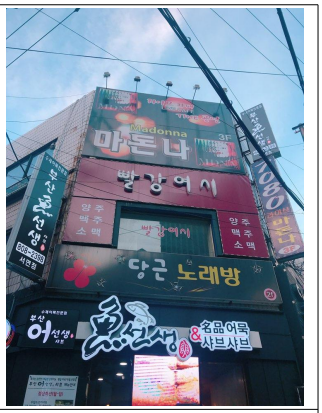
	연제구	• 연산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이어서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연산 로터리'라 불리는 교통의 중심지임 • 이 지역은 온갖 유흥업소 명함 광고가 깔리고, 밤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업소 간판이 주로 10~20층 가까이 되는 고층빌딩에 들어서 있음 • 연산동에는 한건물에 주점과 모텔등이 함께 있는 풀싸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흥주점 룸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에서의 2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성매매임 • 이런 빌딩의 맞은편이나 옆에는 각종 병원, 한의원, 은행 등이 빼곡한 고층빌딩이 섞여 있음	
		• 하단동은 '북창동식'을 대놓고 홍보하는 등 매우 노골적인 형태의 제목이나 여성의 신체를 드러낸 간판이 많음	

광주	서구	• 치평동(상무지구)은 관공서와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광주의 최대 유흥밀집지역이 되었음 • 고급유흥주점, 모텔과 호텔, 대형 음식점들이 많고, 대로 건너편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음 • 상무지구의 라마다호텔 뒤쪽으로 규모가 큰 룸살롱이 대부분 모텔, 호텔과 한건물에 위치해 있고, 광주지역 대부분의 룸살롱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태국마사지, BAR, 안마시술소 등이 사이사이에 있고 도로 한면에 룸살롱이, 반대쪽 도로변에는 노래홀이 분포되어 있음 • 상무지구 피렌체호텔을 중심으로 밤문화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업소내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풀살롱들이 대부분 이 부근에 형성되어 있음 •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스티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월 1회 아웃리치를 나가는데 대형 룸쌀롱에는 수십명의 여성들이 대기실에 있고 수명의 실장들과 카운터 웨이터등 관리인들이 있고, 업소내부에 현금ATM기가 있는 곳도 있음	
전주	중화산동	• 유흥주점 밀집지역은 다방과 안마시술소, 모텔(숙박업소) 등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차로 유흥업소 2차(불법성매매)로 숙박업소로 연결된 성착취 산업의 경향성을 알 수 있음 • 현재 전주의 주요 유흥주점 밀집지역의 폐업이 늘고 마사지업소가 증가, 중화산동에만 37개의 마사지업소가 있음 •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는 외국인여성의 문제로 특히 마사지업소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의 경우 업소 내에 숙소가 함께 있어 더욱 폐쇄된 환경에 놓여 있음 • 유흥주점 및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외국인 여성의 경우 단속 시 대부분 강제출국 조치가 되는데, 외국인 여성의 인권문제는 배제되고 신속한 강제출국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대로된 사건조사조차 이루어지지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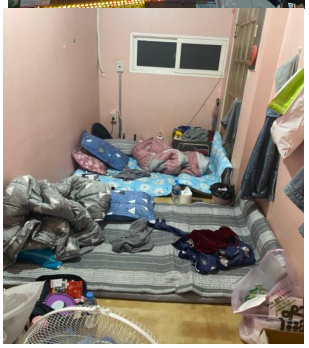 마사지업소 내 숙소

2. 단속과 관리;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통로로서 유흥주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법에 의거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전국민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삶의 불편을 넘어 생계를 위협받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유흥시설 방문자 숫자는 600만 명에 달했고[8], 유흥주점 발 간염도 이어졌다.

경찰청과 지자체에 의해 2021년 4월 5일부터 5월 23일까지 7주간 4,700여명이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5월 19일에는 대구 북구 산격동 유명 호텔 지하 가요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 6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23일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155명이나 나왔고, 부산의 경찰 간부는 집합금지 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걸리기도 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더욱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9].

유흥주점은 오랜 기간 2차, 성매매영업과 업소 내 유사성매매 등의 불법영업이 문제시되어 온 곳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들은 유흥주점 유흥접객원 여성들에 대한 업주와 구매자의 성폭력과 성추행, 폭행과 2차 성매매 강요 등의 사건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종사자들의 생계를 빌미로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업주와 구매자들에 의해 가장 안전이 위협받는 이들도 밀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요구받는 여성들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전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여전히 불법영업행위를 이어가며 국민과 종사자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흥주점의 영업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불법영업행위 단속과 조치상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권역을 나누어 11개 상담소와 성매매문제해결위한전국연대 사무국이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앞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보듯이 다른 업종보다도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유흥주점이고, 게다가 감염의 고위험 업소이기에 행정과 경찰력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을지는 매우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업소들은 거의 영합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고 단속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까지 해놓고 영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1. 유흥주점 단속과 관리 업무 현황

---

8) 매일경제, 2020.09.18.,"코로나19에도...석달간 룸살롱 방문자 600만명 달해

9) 뉴스1, 2020.09.30.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현황'", 시사저널, 2021.05.24.,"빗장풀린 유흥업소...집단감염 진원지 되나", 조선일보,2021.05.20., "부산경찰 간부, 집합금지된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단속돼".

경찰의 유흥주점에 대한 수사는 광역단위의 경찰청은 생활안전부의 풍속단속계가 각 지역별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의 생활질서계가 주로 담당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자치경찰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영의 권한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상황에서도 가장 고위험군이면서도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유흥주점과 관련한 단란주점 등 풍속영업업소들은 성매매 등 불법영업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들이었다. 때문에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과연 어떠할지를 주목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는데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경찰과 풍속영업 업소들의 유착비리 등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해질 수 있을지 등 이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의 행정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유흥시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10] 정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시·도지사들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며칠 사이 유흥업주들의 모임인 유흥업협회 등이 자신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업주들의 로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11]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들이 국민과 지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일수도 있는 사안을 직접 나서서 요구한다는 건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다. 다른 모든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하며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4차 추경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흥주점을 포함시키는 것에는 시도지사들에 이어 국회까지 별 이견 없이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인숙의원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감염 공포에도 600만 명이 룸살롱을 이용했다며 유흥주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룸살롱 접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12]

한국 자영업에서 유흥주점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의 접대비 사용액은 늘 문제적이었다. 코로나로 전국민이 방역에 동참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와중에도 속칭 ‘룸살롱’이라 불리는 유흥주점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00만 명 가까이가 방문했다.[13] 이것은 방문자 QR코드 관리현황에 따른 숫자일 뿐이다. 업소를 방문하고도 여러

10)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시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형평성에 맞게 모든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는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디지털타임즈,2020.09.10.,「17개 시·도지사 "유흥업종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해야"」

11) “14일 오전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임직원 및 회원 등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버렸으니 국회가 살려달라"는 주장했다.”(뉴시스,2020.09.14.,「유흥주점 업주들 "우리도 가장…2차 재난지원금 왜 빼나"」)

12) 한겨레신문,2020.09.22.,「권인숙의원“유흥주점은 코로나 지원대상에서 빼야”.」

13) “18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QR코드 관리 현황’에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이들의 숫자까지 합해진다면 600만 명은 그저 최소 추정치일 뿐이다. 게다가 밀집업소 대부분이 영업을 제한 당하자 유흥주점들이 안마시술소와 같은 장소로 옮겨 손님을 받거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불법영업 실태가 계속 단속으로 드러나고 있다.[14]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클럽을 포함한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한 달 여 뒤에 유흥주점(룸살롱)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풀었고, 영업 재개를 허용한 당일 강남구의 가라오케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비난을 받았었다. 2021년 9월 현재에도 유흥주점을 통한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흥업주들의 어려움도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종사자들의 권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업주들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자유 계약직으로 일하는 형태인 유흥주점의 종사자들은 일하지 않으면 어떤 수익도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업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일을 해야만 한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상담에서도 실제 일을 하지 못해 생활이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염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 추적당하는 일을 겪을까하는 걱정이 더 앞서기도 하였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있어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생과에서 유흥주점의 허가와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얼마나 이에 대한 관리를 계획적으로 철저히 하느냐는 유흥주점의 현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창원 상남동의 사례처럼 생활밀접형 시설이 아닌 유흥주점이 아파트나 생활시설들과 섞여 하나의 커다란 복합타운을 형성하게 된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포함한 시설허가를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과 관점은 유흥주점 수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주요 변수이다.

행정동 하나에 수십 개에서 백 여 개에 가까운 유흥주점이 있다면 구청 위생과의 단 몇 명의 인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유흥주점 불법영업 실태는 실제 감염병 위반과 함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빈번이 있는 불법영업행위이다. 상담소들은 매번 이러한 업소 밀집지역을 현장방문하여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간판 등의 성차별, 인종차별 내용들의 시정부터 유흥주점 내부의 소방법을 어기는 안전문제까지 눈에 쉽게 띄는 불법행위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업소이면

따르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도입된 이후 3달 간(6월 10일~9월 10일) 전국 3만8000개 유흥·단란주점을 이용한 사람은 연인원 591만명이다. 전자출입명부는 고객이 네이버 등에 접속해 일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업주가 관리자용 모바일 앱으로 스캔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외 헌팅포차·감성주점은 연인원 127만명이, 콜라텍과 노래방은 연인원 120만명이 이용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 출입한 인원으로만 보면, 다른 유흥업소보다 룸살롱을 이용한 인원이 4배 이상인 것이다."(2020.09.18.<조선일보>,「'(단독)코로나 공포 뚫고, 석달간 600만명 룸살롱서 놀았다'」)

14) 2020.09.01.<SBS>,'성업 중인 안마시술소, 들어가보니 룸살롱 영업'.

서 고강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소이다. 하지만 지금의 단속과 관리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부터 코로나10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계기로 집중적인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96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9조(출입) 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96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4., 2014. 4. 29.>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2-2. 단속 조치 사례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상황은 크게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으로 나뉜다. 다수의 경찰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내용은 지자체 담당, 주요 단속 및 조치사례의 경우는 개인정보 및 범죄 수사 등의 자료로 답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범죄 수사의 자료로 볼 수 없음에도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역의 유흥주점 점검 개소와 위반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전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았던 지역의 변별점은 무엇일까.

일부 지역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한 점검대상 업소 수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통계로 부존재'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매우 문제적이다. 유흥주점은 법률에 의거에 경찰 생활질서계의 주요 단속대상 업소임에도 이에 대한 통계조차 부존재 한다는 답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반 국민도 쉽게 그 통계수치를 알 수 있도록 매월 업데이트 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담당 업무를 수행해야할 경찰이 '관리하지 않는 통계'라 답한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답변이 전국의 그 많은 유흥주점의 규모와 불법성매매를 포함한 종사여성의 인권침해 상황들에 대한 암담한 현실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주요한 징표일 것이다.

버닝썬에서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동원하고, 성착취 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러한 현실이 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버닝썬의 사례에서처럼 공권력과의 결탁 등이 있었고, 이렇게 자금력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직접 규칙을 만드는 자이고, 있는 규칙도 깰 수 있는 자들이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는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는 코로나19의 감염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유흥주점 관리의 허점과 문제점은 향후 대책을 위한 주요 지표로서 현재 실태가 지금의 인력과 대책으로는 대응

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들을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흥주점 주요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행위 (2020.03~2021.03, 지자체 위생과)

-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
- 단란주점 유흥접객 행위
- 호객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영업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킴
- 청소년 연령확인 하지 않고 출입허용
- 유흥접객원 명부 미비치
- 유흥주점에서 종사자 명부 미기재
- 간판에 해당 업종명 미표기 및 신고된 업소명과 다르게 표기
- 객실 내 잠금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영업
- 사업자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지 않은 업소
- 불법 시설 개조
- 손님에게 주류제공 후 메뉴판 가격과 상이한 가격 청구

자료청구 기간이 1년간 이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을 보면 유흥주점 영업의 문제점이 고스란이 드러난다. 여전히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업소들이 있다. 유흥주점의 시설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객실 내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사례는 매우 문제적이다. 밀폐된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1:1로 있게 되는 경우 유흥접객원 여성들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밀폐된 방의 접객행위는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잠금장치까지 한다는 것은 유흥접객원 여성들에 생길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 범죄의 소지를 더욱 방조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만 하여도 이렇게 심각한 사안들이 단속과 점검이 강화되는 시점에 드러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어떠했을 지가 더 큰 우려로 다가온다.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서비스 내용의 성착취와 인권침해는 밀폐된 방과 같은 유흥주점의 구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유흥주점의 시설 구조와 영업의 내용까지 모든 걸 고려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Ⅲ. 규정이 성착취를 증거하다: 유흥접객원 경험여성 인터뷰를 중심으로

'인터뷰 참여자(이후 참여자)'들은 모두 16명으로 최근까지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했는지, 또 재난 상황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실태는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불법영업이 일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입 연령은 총 16명 대상자 중 10대가 3명, 20대가 10명, 30대가 3명이다. 성매매 유입연령은 21세 이하가 8명으로 반수 이상이 청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 경험 기간과 유흥접객원 경험 기간은 1년에서 21년까지로 차이가 크지만 대부분 최근까지 성매매와 유흥접객원 경험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 한 번 유입된 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이 삭제되는 것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이후 여성들의 생계 등의 어려움을 걱정하거나 알선자나 구매자, 이러한 일을 지탱시키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유흥접객원 유입과정은 대부분 당장의 생활비 마련과 사채, 이전 업소의 선불금 등 빚을 갚기 위해, 또는 다른 취업 활동이 어려운 개인의 상황 등 모두 현재의 곤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소득과 당장 일에 필요한 숙소와 그 외 비용 등을 제공한다"는 유흥접객원에 유입되었다. 21세에 최초 유입된 A의 경우 친구들과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다방에서 단 6개월 만에 빚이 "100에서 많으면 300 사이였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다 빚이 비슷해 지"게 되었다고 한다. 성매매피해 상담에서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다. 유입경로에서 특징적인 점은 최근 몇 년 사이 유입된 경우 '알바천국'이나 '여우알바'등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유입과정에는 친구나 지인 등 주변인 등의 권유나 영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기본정보(나이, 유흥주점 경험 기간, 일했던 주요 지역)와 유흥접객원 유입배경

A,(35, 2008-2021, 구미 원주)
20세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과 다방에서 일하다 빚이 많아져 21세에 보도방을 가게 되었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B(36, 2001-2021, 서울)

17세 당시 '조건만남'을 하던 친구를 따라 집을 나와 방을 구해 살고 있었다. 방학 때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간다고 하여, 친구들의 소개로 가게 된 곳이 보도방이었다.

C(23, 2017-2019, 대구)
20세에 학교를 다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어야 해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었다. 같은 처지의 친구가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벌어서 복학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급을 주는 일자리로는 불가능하니까 한 달 반 정도만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친구가 '알바천국'을 보고 간다고 하였는데, 친구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D(43, 2017-2019, 대전)
39세에 개인 채무와 아이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유흥접객원 구인사이트인 '여우알바'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연락이 된 사람은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E(39, 2006-2021, 제주)
24세에 친구의 일수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가 이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계속되는 독촉에 지인에게 이를 상담하였고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업소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F(21, 2019-2021, 목포 대구)
19세에 시설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어 알고 지내던 언니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 언니가 돈이 필요하고 일할 곳을 찾는다고 SNS에 올렸는데 술을 마시는 업소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 연락 온 곳 중에서 '바'형태인 업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에서 일하는 것보다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여, 함께 살던 아는 언니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렇게 혼자 지낼 작은방이라도 구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G(36, 2006-2019, 부산)
22세에 룸살롱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가 일수 빚의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친구의 멤버[15]와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멤버가 자기 밑에서 일해보라고 권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15) '멤버'란 서울과 부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마담'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유흥주점과 같은 성산업에서 여성들 여러 명을 관리하며 업소와 직접적 계약을 하는 위치에서 선불금 등을 비롯한 것들을 대리 수령하고, 일을 시켜 번 돈을 관리하며 그 일부를 자신이 수수료 등의 명분으로 이윤을 가져간다. 여러모로 마치 연애기획사의 메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멤버나 마담은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업주들과 일종의 거래를 하여 그 사이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보통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들을 '박스'라 부르기도 한다.

H(42, 2014-2019, 부산)
친구들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광고지를 보고 유흥주점에 가게 되었고, 한 달에 300만원 이상 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I(30, 2011-1019, 부산)
20세에 알고 지내던 언니가 일주일 정도 일을 하면 웬만한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벌수 있다며 일을 해보라고 권하였다. 많이 고민하던 끝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J(26, 2012-2017, 서울)
18세에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여우알바'라는 구인사이트에서 당일지급 알바를 구하게 되었다. 연락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하였는데 그곳은 보도방이었다. 당시에는 보도방이 일반 직업소개소이고, 당일 알바로 소개해주는 일이 '서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개해서 가게 된 곳은 룸살롱이었고,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K(30, 2018-2021, 경기)
26세 당시에 수술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잠시 놀러간 노래방 업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술 강요가 없다'고 유인하며 보도방 실장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 일을 하게 되었다.

L(44, 2004-2019, 서울 인천)
27세에 일반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같은 월급으로 생활하면서도 여유 있게 소비생활을 하는 동료가 있었다. 그 동료가 자신이 알바를 하고 있다며 한번 오라고 하여 가게 되었고 시간 날 때 잠깐씩만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일하게 되었다. 처음 갔을 때 실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지인들과 함께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많은 팁을 주었다. L은 당시 마담으로 일하던 동료가 자신이 일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생각한다.

M(40, 2002-2020, 수원)
21세에 대학교 재학 중 학비 마련을 위해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동기 언니 소개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O(49, 2000-2021, 제주)
28세에 카드빚 500만원을 갚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선불금을 준다는 제주에 오게 되었고 와서야 그곳이 룸살롱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지인은 업소의 새끼마담으로 일하고 있었다. 업주와 면접을 보고 차용증 작성 후 현금으로 선불금 500만원을 받고 숙소생활을 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P(38, 2019-2021, 제주)
36세에 아는 언니 소개로 제주에 내려오면서 업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머리하러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일자리 일을 찾고 있다고 하니 보도방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 일을 하게 되었다.

Q(38, 2002-2019, 창원)
20세였던 2002년에 중학교 선배가 일하던 곳에 친구들 3명과 함께 일하러 갔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된 곳이 유흥주점이었다.

유흥접객원 경험여성 인터뷰 기본정보

연번	사례(나이)	성매매 유입 연령	유흥주점 유입 연령	고용형식	성매매 경험기간(경험햇수)	유흥접객원 경험기간(경험햇수)	인터뷰어
1	A(35)	20	21	고정/보도	2007-2021(13년)	2008-2021(10년)	장은희 김하나
2	B(36)	17	17	보도	2001-2021(18년)	2001-2021(3년)	장은희
3	C(23)	20	20	보도	2017-2021(1년)	2017-2021(1년)	최윤희
4	D(43)	39	39	고정	2017-2019(3년)	2017-2019(3년)	김영아
5	E(39)	24	24	고정	2006-2021(10년)	2006-2021(10년)	김영아
6	F(21)	19	19	고정/보도	2019-2021(3년)	2019-2021(3년)	박현경
7	G(36)	21	22	고정	2005-2019(15년)	2006-2019(14년)	지미영
8	H(42)	35	35	고정	2014-2019(5년)	2014-2019(5년)	위애선
9	I(30)	20	20	고정	2011-2019(8년)	2011-2019(8년)	위애선
10	J(26)	18	18	보도/고정	2012-2017(5년)	2012-2017(5년)	최인정
11	K(30)	23	26	보도	2013-2021(9년)	2018-2021(4년)	최인정
12	L(44)	27	27	고정	2004-2019(15년)	2004-2019(15년)	김유미
13	M(40)	21	21	고정/	2002-2021(19년)	2002-2020(15년)	이보현

				보도			
14	O(49)	28	28	고정/보도	2000-2021(21년)	2000-2021(21년)	허선영
15	P(38)	36	36	보도	2019-2021(2년)	2019-2021(2년)	강미경
16	Q(38)	20	20	고정/보도	2002-2019(18년)	2002-2019(18년)	김유순

*경험기간은 일을 시작한 때부터 일을 마지막으로 했던 시기를 표시한 년도이고, 경험 햇수는 일을 실제로 했던 기간의 총합이다. 때문에 경험기간 안에 일을 중단했던 시기는 빼고 계산한 햇수이다.
*인터뷰 기간: 2021년 7월 ~ 9월
*인터뷰 방식: 연구책임자가 질문지를 작성하고 담당상담원이 상담실에서 질문지에 근거하여 인터뷰 진행함.

1.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업소의 유형과 일하는 방식

1-1. 일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된 주거형태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 자신의 원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안정된 주거가 없기 때문에 업소 주변의 월세형 원룸이나 '달방'이라고 부르는 여관 등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흥접객원은 고정이나 보도로 일하게 되는데 일 특성상 수시로 일하는 장소를 옮기게 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를 자주 이동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매번 이주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안정된 주거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

> 업소 주변에서 월세로 지냈고 가게를 옮길 때마다 가게 근처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지냈다(J).

> 업주가 업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일하기 편하다고 하여 업소 근처에 친구 명의로 오피스텔를 구하고 보증금은 친구가 월세는 내가 70만원 부담을 하였으며 가스 및 전기, 수도 등의 세금은 별도로 친구와 나누었다(I).

대부분은 업소 주변의 월세 원룸에 거주했으며 K는 업소 주변의 고시텔에서 월세를 내고 지냈다. 하지만 업소에 따라 업주가 정해주는 숙소가 있을 때도 있다. A는 업소가 있는 건물의 3층이 여성들의 숙소로 방세와 기타비용을 부담하고 살아야 했고, H는 업주의 집에서 숙박비 30만을 내고 살아야 했다. 업소 주변에 집을 얻는 것은 출퇴근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고, 업주는 방을 얻기 위한 기본 보증금 등을 빌려준다. 그 이유로 업주나 관련인들이 함께 동행하는 등으로 숙소의 위치를 알고 있고, 이것은 이후 관리에 주요하게 이용된다.

출근을 안 하면 집까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막 두드리고 전화하고 집착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에요. 아파서 쉬고 있는데 (중략) 제 집 밑에 같이 일하는 가게 언니들 있었거든요. (업주가) 저를 굳이 데리고 가서 그 집 비밀번호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뚫어달래요. 현관 비밀번호 쳐줬어요. 쳐줬더니 계속 가가지고 두들기니까 언니들이 니가 문 열어준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힘들죠(F)

성매매피해 상담과 지원과정에서 여성들이 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업소 주변에 살았고, 또 업주가 방을 얻어주거나 관련인들의 소개로 얻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살던 집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여성들이 가진 전 재산이라 할만한 생활용품과 집안 살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경찰에까지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탈업소한 경우 업주나 사채업자들이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있을 수가 없고, 그동안 월세는 밀리게 된다. 이 밀린 월세가 다시 발목을 잡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1-2. 고용 형태와 영업 방식

고용의 형태는 크게 '고정'과 '보도'로 나뉜다. 고정은 한 업소에서만 일하며 월급 또는 주급으로 정산을 받는다. 한 업소에서 '알바'를 하기도 하는데, '고정'이 매일 출근하고 한달에 4번 정도의 휴일을 받아서, 업소와의 협의 하에 임의적인 날을 정해 쉬는 것에 비해 '알바'는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일을 한다. 속칭'보도'는 일종의 직업소개행위로 '보도방'[16]이라는 영업형태에서 행해지는데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하지만,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참여자들 중 10명이 보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시점에 가까울수록 '보도'의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 보도방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여성들이 가는 업소는 유흥주점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합법과 불법 경계 없이 일을 하게 된다.

보도장에게 연락이 오면 업소로 이동을 하고, ○○보도방은 봉고차 3대가 있다. 1대는 보도장이 운전을 하고 1대는 전주가 바쁜 날에 나와서 운전을 하고, 1대는 운전만 하는 스물 몇살짜리 애기가 한다(P).

지금은 상주하는 업소는 없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보도차량으로 출근한다.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보도장 휴대폰으로 업소에서 연락이 오고 여성들을 업소 앞으로 데려다주는 방식이다. 거의 룸 형식이고 가끔 오픈된 홀 형태의

16)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서는 '보도방'을 명사로서'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따위에 술 시중을 들거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공급하는 업체'라 되어있다. 여기서 쓰이는 보도는 한자어 補導로 도와서 올라른 데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이다.

단란주점에서 일하기도 한다. ○○에는 업소에 고정으로 있는 아가씨들이 거의 없다. 초이스가 되면 다른 보도방 여성들과 일하기도 한다(O).

보도방 대기실은 작게 골방처럼 되어있어요. 거기서 작게 옹기종기 모여서 화장을 고치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냥 이런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술 취한 아가씨들도 많으니까 토할 때도 있고, 저도 토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욕할 수도 없어(C).

보도방의 경우 보도사무실, 또는 차량에 모여서 대기를 하게 된다. 보통 밤부터 새벽 2시나 6시까지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장시간 좁은 차량과 대기실 공간에 여러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밀폐된 공간이 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화장과 머리셋팅 등 일을 위해 완벽히 차려입은 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 또한 매우 힘든 노동일 수밖에 없다. 고정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어떨까. 룸과 텐카페를 주로 연결하는 보도방에서 일했던 J는 “18~19세 때는 단속이나 이상한 구매남을 만나면 도망이라도 빨리 가려고 보도를 이용”했다고 한다. 고정일 경우 한 업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은 힘든 구매자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도방에서 일했다고 한다.

처음 간 업소는 ○○호텔에 있는 룸살롱이었고 지하1층은 나이트클럽, 지상1층은 룸살롱이었다. 보통 나이트클럽은 주임들이나 웨이터들이 부킹을 해주었는데 손님들이 술을 한잔 더 하고 싶다고 하면 룸으로 데리고 오거나 우리가 나이트클럽으로 내려가는 구조였다. 그 당시에 그 호텔은 규모가 컸다. 나이트클럽 룸까지 하면 못해도 50개는 됐던 것 같다(G).

고정으로 일한다 해도 하나의 업소에만 있지는 않는다. 한 업주가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여성들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며 일하게 된다. 시대에 따라 또 주 손님층에 따라 무도장과 유흥주점의 명칭도 회관, 나이트클럽, 클럽 등으로 계속 변하지만 내용은 동일한 업소이고 이들 업소들도 유흥접객원을 고정으로 두거나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는다. ‘버닝썬’ 같은 2부 클럽이 대표적인 무도형 유흥주점 업소이다.

1-3. 테이블서비스 대가와 지급방식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테이블서비스가 주 수입원이며, 여기에 2차 성매매비용을 합산해 받는다. 수입을 정산하는 방식도 업소마다 다른데 매우 부당한 계산방식으로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해도 빚이 늘어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았다. 다만 보도방이나 알바의 경우 일일 정산으로 이전보다는 개선된 방식이 통용되기도 했다.

테이블비 9만원, 이차는 27만원으로 이차비에는 테이블비가 포함되어 있고, 한 달 계산이고 가불에 대해서는 선지급으로 하면 계산할 때 가불금액 및 지각비,

결근비, 기타 비용 다 제하고 받는다(I).

2차가 없는 경우 노래방 테이블비는 시간당 3만원, 유흥주점과 비즈니스룸 테이블비는 시간당 3만 5천원~4만원이다. 업주가 손님에게 시간당 비용을 받고 해당 금액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중 7천원을 소개비로 보도방 업주에게 지불한다. 룸보도방의 경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테이블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중 1만원을 업주에게 지불하고 여성이 9만원을 가져간다(M).

코로나 전에는 9만원, 코로나 이후에는 11만원을 손님에게 받아서 3.3% 봉사료 제하고 받았다. 원래 당일 지급인데 다음날이나 3일 후에 지급해 주었다. 2차 포함하면 50만원인데, 선불이 있는 아가씨들은 이 돈으로 일수를 갚고 받는다(E).

고정으로 일하는 고급 룸살롱의 경우 테이블비는 8만원~11만원까지 받고, 2차 비용은 2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보도방을 통해 갈 때는 보통 테이블비 3만원을 받고 이 돈에서 보도방 업주가 7천원을 갖는다. 하지만 유흥접객원이 일한 댓가의 지불은 지역과 업소 유형, 업주 등에 따라 매우 다르고, 또 수수료나 그 외 여성들이 받는 금액에서 제하는 비용들이 모두 제각각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 한달이나 주급 등의 기간 산정 방식도 일률적이지 않다. 시간비가 보통의 노동자 시급보다 높게 책정되고 일의 내용도 다르다 보니 마치 단시간에 많은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일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 등 각종 비용산정 이후 여성이 실제 받는 돈의 액수는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맞춰 봤는데 제가 일한 거에 비해 안 적은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더니 니 일 한거 아니다. 이러면서 돈을 깎아요. 나와서 적고, 들어갈 때 적고 캔슬 나면 캔슬 났다고 표시를 하거든요. 가게에 장부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계산을 하는데 제 꺼는 서른 몇 개가 나왔어요. 사장님은 22개, 23개 이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고 했더니 자기가 표시 안 해놓고서 저한테 자기 표시 제대로 했다고 니가 더 줄친 거 아니냐고(F).

1-4. 2차(성매매)의 알선방식

성매매에 관해서는 참여자 모두가 모든 업소에서 2차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여러 이유로 2차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테이블서비스조차 관리자가 넣어주지 않거나 손님이 여성들을 선택하는 초이스에서 제외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활비를 선지급 받거나 빚이 있는 경우 2차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보도에서는 2차를 가는지 안 가는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빚이 있으면 선택이 불가능하다. 룸싸롱의 경우, 2차 거부가 아예 불가능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다. 보도의 경우에는 여러 업소를 돌 수 있지만, 룸싸롱에서 1차 테이블 비용만으로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다(Q)

업소에서 마담, 업주가 2차를 알선하고 업소 근처 모텔이나 손님 숙소로 2차를 간다. 가끔 손님의 집으로 가기도 한다. 2차비나 테이블TC(서비스 댓가)를 손님에게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2차비(28만원), 테이블TC(10만원)을 보도장이 수금을 해서 월 1회 계산을 볼 때 선불금에서 까고 생활비 등을 지출 받는다. 2차를 나가지 않으면 손님에게 초이스가 돼도 마담이나 업주가 손님방에 넣어주지 않는다. 테이블TC(10만원)만 벌면 통비(80만원), 이자(선불금에 5부), 생활비, 머리비, 메이크업, 홀복 구입 등을 감당할 수 없고 하루에 2개 테이블 이상 일하면 다음날 술병이 난다(O).

고정으로 일하거나 보도방에서 일하거나 상관없이 2차 성매매는 유흥접객원 일의 기본 옵션처럼 여겨진다. 대부분의 손님이 2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여성들이 2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술값과 테이블 값을 받는 것은 마담이나 영업부장이다. 2차를 나가라는 말은 따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애프터가 가능한 여성들을 고용했다. 생리나 몸이 안 좋아서 2차를 못 간다고 하면 빚을 그만큼 못 까는 거고, 초이스에 한계가 있다. 손님들은 대부분 2차를 원해서 오는데 내가 2차를 못 간다고 하면 나를 초이스 하지 않는다. (G)

1차 테이블비용은 3만원이지만 그것으로는 수입이 되지 않아 손님에게 술을 많이 먹이게 했어요. 손님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을 때는 업주가 심한 욕설을 하고 2차를 강요했어요. 지각하면 3만원 지각비와 결근하면 10만원을 결근비로 내야 했고, 그날 계산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술매상이 좋지 않으면 2차를 나갔고 2차비는 20만원을 받았습니다. 2차비는 손님이 직접 업주에게 다 지불해 놓는 방식이죠(H).

일부 업소들은 하루 벌어야 할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하루 일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여성이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는다. 왜 유흥접객원만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부당한 계산법을 감수해야 할까.

2. 유흥접객원, '일'의 내용

2-1. 일의 시작; 일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비용

인터뷰 참여자들은 일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매일 10만원은 기본이고, 그보다 조금 적거나 훨씬 더 많이 들기도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매일 드는 비용 외에도 상시적으로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지출을 사치나 허영이라 지적하며 여성들에 대해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 와서 돈을 쓰는 소비자인 구매자들은 무얼 바라고 테이블서비스비와 2차비 등 상당한 금액을 쓰는지를 생각해보자. 유흥접객원에게 무얼 기대하고 있는가. 만약 이런 식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유흥접객원의 일은 가능한가.

> 의상, 화장품, 2차 용품(콘돔, 젤 등)을 준비해야 하고, ○○ 근처 유명한 홀복가게가 3~4곳이 있는데 거의 매일 방문했고, 초이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홀복을 잘 입어야 한다. 업소에서 받는 거의 모든 돈이 홀복 사는데 쓴거 같다(P)

> (텐카페) 만근하면 텐프로와 쩜오처럼 꾸밈비로 3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었고 그 외 필요한 비용은 전부 개인이 해결했다. 말로는 꾸밈비를 준다고는 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매일 머리 18천원, 의상 4만원, 콜 3만원씩, 한 달에 월세 130만원씩을 냈었다. 하루에 준비 비용만 9만원 정도였는데 거의 매일 출근했으니 써야 하는 비용도 무척 많았다. 그 외에도 화장품이나 성형비용으로 생겼던 빚을 갚느라 벌어도 남는 게 없었고 적금도 들어본 적이 없다(J)

> 의상비, 화장품비, 교통비 등 일하기 위해 지출하는 한달 유지비는 약 400만원 가량 드는 것같다. 출근할 때는 주거지에서 보도방까지 개별 이동하는데, 눈에 띄는 화장과 의상 때문에 항상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M)

의상과 화장품, 머리셋팅 비용, 그리고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과 젤 등까지도 여성들 개인이 준비한다. 업소와 완전 근거리에 숙소가 있지 않는 한 완벽히 차려입은 상태에서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일이 끝나는 시간도 새벽이거나 이른 아침이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도 한정적이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차림새 등으로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곤 한다. 그래서 정해진 택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출퇴근을 위한 비용도 무시 못 할 비용이 드는 것이다. 여기에 성형과 보톡스 주입, 다이어트 비용도 있다.

> 사장이 저희한테 산부인과 가서 다이어트 약 먹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때 먹고 나서 수면제, 식욕억제제, 산부인과에서 그걸 먹었는데 잠도 안 오고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막 짜증나고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약을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언니들이 보는 앞에서 먹으라고, '니 약 안 먹지? 보는 앞에서 먹어라.'이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약 먹고, 빈 껍데기 보여주고, 언니들이 다 감

> 시했어요. 돈 아깝게 니가 이거 먹어야지, 왜 안먹냐고, 살 빼야지 니도 잘 될거 아니냐고 맨날 그 얘기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F)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십대인 여성에게도 살을 빼라고 하고, 다이어트 약을 먹으라고 강권한다. 물론 약값은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구매자들에게 선택될 수 있는 상품가치를 갖기 위해, 스스로의 결심이 아니라 지속해서 '살빼라'는 압력, '어려보이라'는 압력은 여성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힌다. 이러한 주문은 두가지의 파생 효과를 낳으며 유흥접객원 여성에 대한 통제가 이윤이 되는 알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한가지 효과는 여성의 낮은 자존감은 계속 이러한 착취적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또다른 하나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 유흥접객원으로 일해야 하는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파생 효과가 있다. 유흥접객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이러한 노력과 선택이 역전되어 여성들을 비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즉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선택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로 설명되며, 사치하려고, 성형하려고 유흥접객원을 한다고 손쉽게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알선업자와 구매자, 이 사회는 모든 것을 그저 여성에게 전가하면 그만인 아주 편리한 구도가 된다. 심지어는 여성들도 그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갖힌다. 그게 훨씬 덜 비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다른 여성들에 비해 유입된 기간이 짧은 F는 이런 시스템을 억울해하고 저항하지만 결국 수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홀복 사고 구두도 사고 코스프레용 세일러복, 교복, 치파오 가게에서 다 입어보라 그러고, 입어봤는데 안 맞으니까 돼지새끼라 그러면서 사장님이 저보고 욕하더라구요. 너 여자 아니라고 사람 아니라고...(중략)....살 빼래요. 너가 뚱뚱해서 그런거라고. 아가씨들이 못나서 일 안 되는거라고 다 저희 탓을 돌려요. 막 썩을 년들이 너네가 다 살을 안 빼서 그런거라고 아가씨들이 얼굴이 이 정도로 못 났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라고 니들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F).

> 옷 사 입어라, 구두 바꿔라, 지적이 정말 많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라, 아니면은 꾸며라 그리고 그 더위에 가발을 항상 쓰고 다녔어야 했었어요. 긴 머리 여자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지불하는 거죠. 예뻐지기 위한 비용은 아가씨의 몫일뿐이에요. 왜냐면 '예뻐져서 손님 더 받으면 네가 좋잖아'라고. 얍삽하죠? 사실 윈윈인 관계인데 자기들이 마치 선의를 베풀듯이 말하는 거죠. 되게 시혜적 입장에서 말을 하지(C).

풀살롱이나 방석집 같이 업소 안에서 유사성매매나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곳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여성들에게 공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서 충당한다. 이것은 전통형 성매매집결지와 같은 방식이다.

가글, 물티슈, 화장지, 콘돔, 젤, 세정제, 템포, 타월, 세탁비, 커피 등을 사기 위해 공금을 걷는다. 5만원씩 걷기는 하는데 그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하면 걷는다. 겨울에 삐끼(호객행위)를 하기 위해 밖에 1시간씩 나가 있으면 추워서 핫팩이나 발열조끼를 사는데 이것은 아가씨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D).

2-2. 구매자에게 선택받는 일 '초이스'

'초이스'는 유흥접객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의 부분이면서, 구매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자신이 돈을 지불할 여성을 선택하는 것은 유흥주점에 가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룸 앞에 줄을 서 있다가 업주나 마담이 부르면 몇 명씩 차례대로 들어가서 손님에게 인사한다. 서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바로 불러서 손님 옆에 앉는 경우도 있고 초이스가 끝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몇 조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여성을 찾아서 손님방에 데리고 들어간다(O).

대기실에 남아있는 아가씨들 전부가 룸으로 들어가면 손님이 초이스 하고, 미러룸은 대기실에 아가씨들이 서 있으면 거울 반대편에서 손님이 보고 고르는 방식이었다(J).

보도나 고정, 또는 룸살롱이든 방석집이든 초이스는 유흥주점의 기본공식이다. 한 업소에 여성들이 3명이든 4명이든 거기서도 골라야 하고, 또 그 업소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다면 다시 다른 업소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쇼핑을 하듯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구매자들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인원수대로 들어가도 모든 것들이 초이스이긴 해요. 들어가서 '아가씨 보여드릴게요' 하고 아가씨가 방에 들어가면 인사를 하거나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차례차례로 말하거나 '아 잠시만 나가주세요.' 하면 저 아가씨 앉히겠다. 아니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가씨들을 앉히는 거죠. 자기들은 돈 주는 구매자니까 마음에 드는 상품을 가질 권리가 있는 거죠. 예쁜 인형 앉혀야지 돈 줬는데(C).

2-3. 기본적인 일의 내용; 테이블 서비스

유흥접객원 여성들을 '초이스'해서 앉히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유흥을 위한 시간이다. 법

률에 명시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것이 유흥접객원의 일, 즉 테이블서비스이다. 이 일에 대한 댓가로 여성들은 3만원에서 10만원의 댓가를 받는다.

> 세팅된 테이블에 얼음, 음료, 술이 떨어지지 않게 채우고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신다.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안마 같은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구매자들이 테이블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여성을 만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테이블에 있을 수도 없고 정산도 받지 못한다(M).

> 함께 술 마시기, 손 잡기, 노래 불러주기, 춤추기, 성희롱도 있었고, 터치는 가슴까지 허용됐는데 참아주기 힘들었었다. 터치를 막아내고 욕이나 비하하는 걸 참아주는 게 힘들었다(K)

여성들이 제공하는 유흥이라는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다. 기본적으로 술을 함께 마시고, 손님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업소에서 정한 규칙조차 그 경계를 넘는 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 그런데 업소의 규칙이 이미 여성 몸에 대한 사용권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터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요구와 강제도 여성들이 알아서 손님들을 잘 다루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손님들의 불평과 불만은 곧 유흥접객원 여성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기본적인 터치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과연 그건 괜찮은 것인가. 유흥접객원이 흥을 돋우는 건 일종의 오락과 여흥을 돕는 일인데 왜 그것이 성희롱과 성추행 같은 타인의 몸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또 업소가 정하는 기본적인 터치의 허용도 한계가 없다.

> 술, 노래, 터치는 기본, 이 업소는 소위 '쓰리노(노팬티, 노브라, 노스타킹)'였는데 당시 주변에서 쓰리노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업소라 궁금해서 와보는 손님도 있었다. 궁금해서 왔다고 2차를 안 나가면 마지막 10분 동안 립서비스를 해주는 게 업소 규칙이었다. 립서비스가 싫다고 거부하면 업주나 실장 눈 밖에 나서 안 할 수 없었다. 립서비스가 제일 힘들었다. 냄새도 나서 너무 힘들었다(L).

> 손님 기분 맞추고 손님이 벗으라면 벗고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터치하면 그냥 그거 다 받아주래요. 오픈해 달라고 하면 오픈해주고. 사장한테 그것도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요. 위에 안 벗는다고. (오픈은) 옷을 속옷까지 반 이상을 벗는 거에요. '미안한데 나는 그런 아가씨가 아니야'그러면 '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했지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이 100분의 1이예요. 없어요. '야 짜증나니까, 벗으라면 벗어.' 이러는 손님 진짜 많아요.(F).

여성들은 구매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에 억울해하면서도 큰 소란이

나지 않도록 참고 또 참으며 기분을 맞추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터치 안 된다고 해도 할 놈들은 다해요. '아 안돼요.' 이렇게 연약하게 말하는데 누가 들어줘요. 이미 그 사람들은 돈으로 여자를 샀다는 거 자체가, 정복력이나 성취감을 위해서 소유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한 건데 나와 동등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작고 연약하고 언제든 뛰면 부러질 것 같은 구두를 신은 가냘픈 여자들이 자기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위험한 장소잖아요. 언제든 성추행과 성폭행을 다 접할 수 있는 곳인데. 1차적으로 보호의 의무는 아가씨들한테 여자들한테 있는 거에요. '왜 거절 안 했어! 나갔으면 됐잖아. 터치했으면 나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물 더러워진다니까'모든 게 다 아가씨 탓이에요(C).

C는 유흥접객원을 함부로 하는 구조에 대해 분명한 비판과 분석을 하고 있다. 손님들에게 저항하다 '고작 술 따르는 년들 주제에'라는 말을 듣고, '그런 년들의 술 받아 먹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왜 들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
참여자들은 테이블서비스에 대해 여기에 소개한 것보다 더욱 정도가 심한 착취적 행태들을 말했다. 업소에서 하는 광고를 보고 오거나 유흥 후기 사이트를 보고 오는 구매자들은 자신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기대한다. "아가씨들은 어떤 광고인지 알 수가 없는데, 손님들이 후기 사이트를 보고 와서 왜 다르냐고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비위 맞추기가 어렵다(E)"고 한다. 특히 방석집과 풀살롱 등은 강도 높은 성적 서비스를 대놓고 홍보하고, 이를 기대하고 오는 구매자들을 받기 때문에 그 업소를 그만두거나 나오는 것 외에는 여성들의 선택권은 없다. 업소가 많고 여성들이 마치 원하면 어느 업소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여성들이 업소를 비교해가며 고를 수 있는 기회의 폭은 적다. 이 유흥 시스템은 여성들을 등급매기고 차별하며 이동시키고, 여성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제 더는 다른 일을 택할 자원이 없는 여성들은 업소를 옮길 때마다 감수해야 하는 면접의 압박과 불안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업주들은 그런 여성들을 향해 큰소리치며 더욱 여성들을 주눅들게 만든다. 최초 유입이나 업소 이동시, 또 일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다.
빚과 생계문제 외에도 회유와 협박, 또는 알선자들의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에 속박되는 경우도 많다. A는 이러한 알선업자의 표적이 되어 동일한 유흥주점이었지만 속칭 '떡집'[17]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 아가씨를 구하러 전국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업주랑 남자 한 명 이런 식으로, 여자를 꼬시는 남자가 한 명 씩은 있어요. 다방을 가든 다른 지역에 술

17) '떡집'또는 '방석집'이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술시중과 쇼를 포함한 테이블서비스와 성매매까지 하는 영업형태를 부르는 속칭이다. 일종의 등급처럼 유흥주점을 구별하기 위해 룸살롱을 1종, 가요주점을 2종, 방석집을 '술3종'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통형 성매매집결지 중에도 '방석집'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 서울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원주 희메촌 성매매집결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종을 가든 유흥주점을 가든 룸을 가든 가서 아가씨를 앉히고 불러서 꼬시는 거죠. 애인 식으로 해서 처음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런 식으로 가게 됐었어요.(A)

2-4. 유흥접객원 '일'과 2차 성매매의 고리

유흥주점에서 2차는 여성들이 원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참여자들 대부분이 2차를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얘기했다. 앞서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일단 2차를 가지 않으면 테이블서비스에서 초이스가 되지 않거나 업소에서 방에 들여보내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고도 했다. 현재의 구조는 여성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힘들게 되어있다. 2차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기본값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애초에 2차가 목적인 손님들이 대부분이라 하느냐 마느냐보다 장소(룸/모텔)나 때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2가지 경우다. 술+노래를 즐기다가 나가는 경우, 먼저 2차를 하고 와서 술+노래를 즐기는 경우, 드물게 아예 2차만 하기 위해 오는 남성도 있었다. 초이스 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룸에서 하고 오고 바로 다음 여성을 초이스하는 식으로 연달아 5~7명까지 초이스 했었다.(L)

술 매상이 적으면 무조건 2차를 나가야 하는 방식이고 (2차를) 나기지 않으면 업주로부터 심한 닥달을 당했다. 다음에 테이블에도 넣어주지 않았다(H).

집결지는 관계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도는 관계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깐. '손님이 너무 진상이여서 2차는 못 나가겠다.' 이러면은 소장한테 전화를 하죠, '나는 이 손님이랑은 이차는 못나가겠다.'장단점은 다 있는 거 같아요. 솔직히 집결지보다는 자기 꾸미는데 돈을 더 써야되죠. 술집 다니면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한 데니깐, 초이스가 안되니깐 내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니깐 그렇게 되는거죠(B).

테이블서비스에서도 언급했지만 2차 성매매가 기본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는 풀살롱과 방석집 같은 곳들은 이미 유흥과 성매매가 같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유흥주점의 여러 서비스 내용을 알고 있는 구매자들은 2차를 나가거나, 안에서 하거나 모두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일 수밖에 없다.

술 먹던 방에서 할 수도 있고, 빈방이 있건 없건 한 사람은 무조건 술 먹던 방에서 2차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한 명 가주고 이런 식으로. (만약 빈방이 없으면) 다 같이 한방에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게 2차비 포함 가격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2차를 안 한다는 없어요. (A).

테이블에서부터 욕을 심하게 해서 마담을 통해 잘라 달라 했으나 못 자르고 2차 올라갔을 때 더 심한 위협과 욕, 비하 등을 한 손님이 있었다. 또 2차 하러 올라갔더니 나 모르게 동영상 촬영하려는 손님도 있어서 삼촌에게 일단 연락했고, 2차 시작하기 전에 삼촌이 와서 동영상 촬영 안 되니 2차 끝날 때까지 휴대폰 맡기고 하라고 했던 적도 있었다. 동영상이 찍히지 않았지만 그 때를 생각하기도 싫다(J).

성매매에 더해서는 더 길게 인용하지 않겠다. 테이블서비스의 내용을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고, 이미 테이블서비스가 성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착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매매'라는 것이 따로이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의 몸을 성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산 것으로 인지하는 과정 자체가 성매매의 한 부분이고 핵심이기도 하다. '삽입'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몸에 대한 성적 권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문제적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허용될 때 테이블서비스는 2차 성매매와 경계가 사라지고 구별되지 않는다.

2-5.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유흥접객원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상황일까. 영업제한으로 인해 갑자기 일이 줄고, 수입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짐작할 수 있지만, 코로나 감염 상황에도 일의 특성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도 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불법행위 단속에서 걸리면 단지 유흥접객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인으로 힘든데, 감염의 위험을 가져온 이들로 지목당하기까지 하는 건 더 여성들을 더욱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여성들에게 감염만큼이나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이든 문을 닫으라고 할 때도 영업은 계속 했다. 실장이 "요즘 손님 없는데 우리 가게는 연다. 오시면 정말 괜찮은 애들로 해드린다" 하고 연락을 하고, 손님들이 예약을 해서 오면 삐끼가 뒷문을 안내해준다. 영업제한 시간에 몰래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단속 뜬 적 없지만 항상 준비를 해 놓는다. 손님들에게 단속이 뜨면 옆방 테이블,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테이블이 셋팅되어 있어서 무조건 가라고 안내를 하고, 단속이 오면 아가씨들은 목에 마스크를 걸고 있다가 마스크를 쓰고, 옆방으로 손님을 빼놓는다. 뒷문이 있어서 도망치는 것은 문제 없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생계를 위해 출근할 수밖에 없다(P)

마스크는 초이스 들어가기 전 룸 입구에서 벗는다. 손님에게 선택이 되면 큐알코드를 찍고 일한다. 손님들은 여성들이 선택되고 술이 세팅 되면 그때야 마스

> 크를 벗고 술을 먹는다. 손님들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증을 들고 다니며 술을 먹지 않는다. 혹시라도 감염될까봐 겁나지만 선불금도 갚아야하고 생계문제도 있어서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다(O).

감염에 대한 우려나 생계 등 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유흥주점을 찾는 구매자도 업소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유흥업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유흥접객원에 대한 고려나 지원 같은 건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접객원이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은 전혀 못 받고 오히려 단속만 받는 것 같다(I)"고 말한다.

> (손님들은)'2차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말은 하는데 조심하는 건 없어요. 유흥주점에 비치한 손소독제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체온도 안잤어요. 명부를 제대로 적지도 않아요. 유흥주점에서 감염 많았잖아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도 적는거 뭐 하는 거를 되게 거부하거든요. 손님 기분 나쁠까봐 '니가 대충 적어라'이렇게 하거든요. 유흥주점에서 코로나 나오고 했을 때 제대로 손님 파악은 하고 있나, 드러나는거보다 훨씬 더 많을텐데 생각했어요(A)

> (마스크같은 안전용품) 아무것도 안 주죠. 사실은 노동이나 자본 취약계층은 결국 질병에서도 취약계층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죠.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더 쉽게 빠져드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비극이 쉽게 일상에 녹아드는 거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비극인지 몰라 이미 관통을 해버렸거든(C).

C는 비극이 일상화 되어서 재난상황에도 여전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철저히 객관화 하고 있다. 여성들은 위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무서운데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집합금지 되면 좋겠다(A)"고 생각하기도 했다. 유흥주점을 통한 전파와 감염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영업을 쉬거나 못하는 날이 2021년이 되면서 더 늘어났고 업소들도 타격을 받았다. 여성들은 이로 인해 강제적이나마 일을 쉬게 되었다. 하지만 쉬는 날들의 불안은 일을 할 때의 어려움과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준다.

> 집합금지 떠가지고 '아예 문을 닫아라'이렇게 돼서 출근을 아예 못했고. 이제 그냥 미뤄놓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사채) 몇 군데는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미뤄놨죠(B).

> 아프거나 생리기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출근을 못 하고 매달 고정 지출되는 돈은 있으니 선불금이 점점 늘어난다. 현재 일하는 보도방 업주와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선불금을 받았다(O).

> 처음에는 빠 같은거 찾아봤는데 그것조차 뒤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일을 안 했어요. 쉬거나 아니면 그냥 알바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씩 팔던가. 거의 대부분 연락을 해보잖아요. 거의다 그랬어요(A).

유흥접객원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동일하다. 여기에 더해 유흥접객원 여성들의 빚이 생기는 이유, 빚과 생활비가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업주들이 선불금을 주던 시기나, 사채업자와 그 외 전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상황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3. 유흥접객원 일의 '삭제'는 필요한가/가능한가

3-1. 유흥접객원 규정과 낙인

부녀자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는 것, 또 낙인에 대해서 물었다. 법률상 부녀자만이 유흥접객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 몰랐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차별적이라고 답했다.

> 전혀 몰랐다. 어이가 없다. 처음에 설명할 때 깜짝 놀랐다. 호빠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도 있는 줄 알았다(E).

또 여성들은 대부분 매일매일이 부당한 일의 연속이라고, "언어 폭력이나 인권침해는 매일 있는 일(O)"이라고 말한다. 모든 노동과 일은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끼고 겪는 순간이 있다. 그러한 일과 유흥접객원의 '일'로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흥접객원의 일 자체가 낙인이 되는 상황은 왜 벌어지는가. 그 지점이 바로 다른 일과의 차이가 아닐까. 폭력과 모욕이 '일'로 여겨지는 상황,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즉 피해가 낙인이 되는 것, 유흥접객원이 당하는 부당함은 폭력을 폭력이라 할 수 없고, 가해가 권리가 된다는 데 있다는 걸 여성들의 인터뷰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욕을 하거나 비하할 때도 힘들었다.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너희 부모가 이러라고 너 키웠냐'고 하는 손님도 있었는데 상처가 컸다. 욕하고 술을 계속 먹이는 사람, 집에 안 가고 아가씨 안 보내주는 사람, 만지는 사람이 힘들었다(J).

>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게 하고 나서 저에게 제대로 접대 안 했다고 업주에게 말을 하여 술값을 못 주겠다고 하고, 그 모든 비용을 제가 책임을 지고 업주가 저에게 온갖 욕설을 다 했을 때였다(H).

> 다들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텐데 일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책임을 그냥 접객원이라는 그 자체로 낙인을 찍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쩔수 없이 못 빠져 나오는 분들도 많을텐데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I)

사회적 낙인은 업주와 구매자들의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더욱 강화시킨다.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일어나는 온갖 폭력이 그래도 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손님들에 대해 어차피 구매자는 모두 진상이라는 생각으로 감수하고 있다.

> 진상은 테이블 진상과 2차 진상이 있다. 테이블 진상은 2차는 나가지 않고 룸 안에서 2차까지 모두 원하는 유형이고, 2차 진상은 룸 안에서는 친절한 모습이었다가 2차에서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유형이다. 구매자는 겉모습만 보고 어떤 유형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진상이다(M)

결국 모두가 진상일 수밖에 없는 일, 유흥접객원이 상대하는 구매자의 모습이다. “웬만한 진상은 진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L)”진다는 여성의 말처럼, 구매자가 친절하게 굴어도 이 일의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 여성들은 매순간 그걸 느낀다. “이건 어느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G).”

> 남자들이 여자한테 강압적으로 하고 성추행 성폭행 강간 하잖아요. 그거를 손님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봐 주는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자기들이 고용했으니까 물건 취급하는 게 너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가게들은 거의 다 돈이 목적이니까, 코로나 시국에 돈이 안 벌리니까, 언니들이 다쳐도, 다른 아가씨 불러서 놀면 된다 생각하니까. 물건 취급을 하고, 그냥 벌레 취급만도 못하다 생각하면 되죠(F).

>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인 것 같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구조이고 특히 낙인을 주는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대부분 업소에 와봤기 때문일거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맞다. 하루빨리 정신차리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내가 제일 싫었던 것은 유흥접객원들은 머리에 든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명품 밝힌다는 말을 듣는 거였다.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고 요구하는 손님도 있었다. 그만큼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배운 것이 없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시킨다. 정말 무례한 것이 아닌가. 그 낙인들을 벗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다(G)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는 것, 얼마 전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시험을 보게 하고, 문제가 ‘건물 이름 한자로 쓰라’는 것이었다 하여 논란이 되었다. 청소노

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이런 무시와 무례가 겹쳐져 행해진 것이다. 유흥접객원들도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며,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 감정노동에 술까지 마셔야 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무시와 무례는 마치 이 일을 하기로 한 그때로부터 시작된다. 낙인은 외부로부터 또 자신의 내부로부터 여성들의 자존감을 한없이 떨어뜨린다.

> 미성년자일 때부터 일을 한 애가 있었는데, 대학가고 싶지 않냐고 했더니...(중략)...'자기는 이 길 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나는 거기서 되게 그게 너무 부당하고 슬프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여성들을 성매매로 몰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베기겠어요. 진짜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알바천국 알바몬만 봐도, 이력서만 올려도 '터치 없는 모던 토킹 바, 시급 높아요. 마사지 해보실래요?' 이런 게 시급 높다고 해서 쫙 도배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길 가다가 커피 한잔 사먹을 돈이 없어요. 누가 눈이 안 돌아 가겠어요. 사회가 몰아가는 거죠. 유흥접객원으로 가는 순간 2차고, 그 다음에는 뻔히 보이는 단계 아닌가요? 왜 거기서 아무도 부당함을 느끼지 않아? 왜 성구매자 욕을 안 하면서 성 노동자 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지, 배운 인간들이 남자는 그렇게 감싸 돌면서 저기서 진짜 죽어나가고 있는 여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니 부당했어요(C).

절망의 순간, 사회가 내몰아간 선택에 의해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당함과 억울함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절절이 배어있다.

3-2. 유흥접객원 삭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성들은 삭제해야 된다고도, 삭제하면 안된다고도 마음 편히 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3만여개의 유흥주점과 그 외의 장소들,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그 일이 부당하다고 해도,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당장의 삶 앞에서 누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더구나 여성들은 법조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미 그래도 된다는 인식과 태도가 만연한데 조항이 삭제된다 해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유흥접객원 규정이 삭제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불법영업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나 낙인 등이 두렵다(O).

> 생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가씨들이 이 일이 생계잖아요. 이 일을 해가지고 뭐 생활비하고 메꾸고 메꾸고 하는데 이 일이 스톱이 되버리면 아가씨들이 완전히 다 그거 되겠죠(B).

규정이 삭제되면 많은 생활이 어려운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일하는데 많이 힘들었다. 그때 빚이 있던 여성들은 더 많은 빚을 질 수 밖에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들도 많았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유흥접객원 규정이 삭제되면 좋은 점은 예측할 수 없고 여파도 똑같을 거다(M)

별 의미가 없다. 2차는 불법인데, 실제 업소 안에서는 구분 없이 일어난다. 손님이 원하면 룸 안에서도 성매매가 일어난다. 그냥 남자를 접대하는 거다. 그 안에서는 하라는 거 해야 되고. 여성들은 같이 술 먹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손님은 왕인 거고,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진짜 술값 못낸다고 하면 아가씨가 술값 계산을 다 했다. 동등한 사람이 아니다(Q).

유흥접객원이 삭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후는 어떤 대책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불안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껏 그 일로 생계와 생활을 유지해온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여성 지원활동을 해온 상담원들의 걱정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기획할 때 누구도 여성들의 답을 예측할 수 없었다. 걱정과 우려가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것만 예상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걱정과 우려는 되지만이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흥접객원 조항을 삭제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그녀들을 의견을 모두 펼쳐놓고 함께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사회적인건 모르겠는데, 업소 일하는 사람이 줄거 같아요. 왜냐면 저 이번에 느꼈는데 집합금지 때문에 아예 일을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정말 일을 안 하고 다 쉬었어요. 아니면 다른 일하거나....(중략).....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정말 놀 게 없어서 집에 있는다 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유흥주점도 못 다니고 유흥을 아예 못 하더라구요....(중략)... 개인간의 채팅이나 그런 것도 더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것도 나라에서 나중에 채팅 자체를 엄격히 할 수 있는 거고 하나씩 없어졌으면 좋겠어요(A).

성폭력을 막으려면 아가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돈을 줬다는 이유로 손님들은 아가씨들을 쉽게 본다. 아가씨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데 너무 쉽게 본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E).

술을 마시기 위해 누군가는 술 따르고 시중들고 온갖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삭제되야 한다(P).

일을 할 당시에는 '남자가 술을 마시면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술을 마시면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굳이 술을 마시는데 여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2차는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에서 '유흥접객원'이라고 하니 하나의 직업, 노동이 된 것 같고 2차도 노동으로 보는 것 같다. 규정이 삭제되면 유흥접객원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데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고민된다. 삭제와 상관 없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을 텐데 삭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L).

부당하다. 여자를 너무 하찮게 보는 것 같고 인격체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존중과 배려가 없다. 남자들의 반발심이 커질 것 같지만 걱정은 안한다. 규정이 삭제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더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을 주고 여자를 샀다는 남자들의 당연하고 어이없는 생각 때문에 낙인이 생기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정신차리라고 해주고 싶다(K).

강요에 의한 선택이었는데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삭제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무조건 삭제되어야 한다. 법에서 여성들만 특정하는지 몰랐다. 업주와 남성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J).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으로 속여 여자들에게 2차를 강요하였는데 책임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여성들이 다 지는 것 같다. 최소한 유흥접객원이라는 말 자체가 삭제가 된다면 낙인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접대부'로 나쁘게 보는 것 같다. 유흥접객원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다들 개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접객원이 된 것 뿐인데 그 자체가 낙인이 되어 사람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든다(I).

최근 코로나19로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마치 다 죄인처럼 몰아부쳤는데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면 낙인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싶다....(중략)...유흥접객원, 도우미가 된 것은 정말 그렇게까지 밖에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누가 그런 것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슨 또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 같다(H).

규정이 삭제되는 것에 찬성이다. 나는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좋았는데, 만약 규정이 삭제되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돈이 필요해서, 절실해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무 힘들게 일해 봐서 안다.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 그곳을 나와도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정신과적인 증상이다. 자살충동, 불면, 우울은 기본값이다(G).

여성들만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말도 안 되고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남자가 원하는 것이 결국 성관계이기 때문에 접객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접객원이 서빙의 개념이라면 굳이 여성일 필요가 없다. 여성만 해야 하는 직업이 어디 있는가(D).

이 조항이 있는 이상은 여자들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조항이 있다는 거 자체가 나라에서 성매매를 지원해주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성매매 여자들이 이 루트를 통해서 나중에는 2차 평생 못 빠져나가는 루트를 타는 거를 많이 접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중략)...법이 선행돼야 사람이 바뀌어요. 적어도 생각은 안 바뀌더라도 그래야 누군가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불법적인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잡는 건 공권력의 의무에요 왜냐면 그거조차도 모든 걸 시민의 몫에 맡긴다고 그러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죠(C).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C는 “사실 취약계층이라서 이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일을 하면서 취약해지는 것도 맞아요”라고 말했다.

4. 인터뷰를 마치며;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답답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K)”고 인터뷰 끝에 한숨을 쉬거나,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며“좀 열받던데(A)”라고 말한다. 여성들이 말해주는 현실과 그들의 바램들,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강렬했다. 특히 유흥접객원의 일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한 입장과 주장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의 과제가 더욱 선명해졌다.
삭제되어도 규정이 없으니 단속도 안 하고, 더 성행하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삭제가 성매매를 금지한 것처럼 유흥접객원을 금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많은 여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걱정과 불안은 반성매매운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생각과 감정이었다. 답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유흥접객원 삭제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다. 인터뷰를 끝내고 여성들의 마지막 소감으로 이글을 마무리한다.

돈 잘 벌리는 거랑 자기 몸이 아픈 거랑, 마음의 상처랑, 모욕당하는 거는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누가 치료를 해주고 누가 대신 보살펴 줄거예요(F).

인터뷰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고, 피해보는 여성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J).

어쩔수 없이 일을 했지만 정말 유흥접객원, 도우미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다. 그래도 삭제가 된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H)

Ⅳ.나가며: 여성과 노동에서 '유흥접객원' 지우기

유흥주점이 어떤 곳인가. 단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노는 곳이 아니다.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 유흥접객원 경험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과연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착취와 인권침해를 여성의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심기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암묵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은 성별화된 고정관념의 여성성에 기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차별적으로 구성하는 성역할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늘 여성의 육체성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성매매에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속에서 여성이 놓여진 모든 위치에 기본 디폴트로 장착되어 역사 속에 구성되어 왔다. 때문에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피해가 아닌 여성 '역할'의 일부로 해석되어, 피해라고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비난 당해왔다.

우리 사회는 남성 구매자의 시각으로 유흥접객원의 일터를 바라보고, 오로지 '여성'이 부적절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해를 유발했다는 프레임을 짜려한다.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불러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유흥주점 외에도, 우리 사회는 그곳이 어디든 회식과 술자리에서 '도우미'를 찾는다. '여자가 따라줘야 술맛이 난다'는 구태의연한 차별적 발언이 이제는 사라진 것일까. 직장내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는 회식자리에서 여성노동자는 상사를 위한 '도우미'로 손쉽게 치환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의 질문은 오직 여성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술자리 접대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성차별을 공고히 하며, 실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과 그 외 여성 모두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부녀자'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는 것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조항 자체가 문제이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 세계 어느 곳에도 밀폐된 방에서 손님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곳은 없다. 룸살롱이라는 영업형태는 한국인 주재원과 상사직원, 여행객 등을 위해 세계 도처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오직 한국 남성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유흥업소의 코로나19 감염사태의 가장 최대 피해자는 그곳에서 손님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다. 에이즈나 메르스 등의 감염에서도 가장 취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성들이 비난과 혐오의 화살은 늘 먼저 맞는 대상이 되었다.

성희롱 당해도 되는, 성착취 당해도 되는 그런 '일'따위는 없다. 어린 청소녀에게 조차 '미래의 룸나무'라 칭하고, 아르바이트로 땀 흘리는 여성에게 가성비 떨어지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도우미 일당을 운운한다. 이런 실상을 만들어온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이런 '유흥'은 자연스런 여성의 노동으로 만들어온 역사적 맥락과 그것이 일으킨 현상으로서의 도우미 문화와 제3국으로의 이식에 대한 것도 유흥주점의 존재 맥락에서 발생한다.

이번 실태조사가 목표한 것은 거대한 규모의 업종으로서 유흥주점이 재난상황에서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가와 함께 유흥접객원 여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또 유흥접객원의 '일'이 본질적으로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를 얼마나 쉽게 성애화 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여성노동과 유흥접객원의 위치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더 폭넓은 논의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이 실태조사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유흥접객원이라는 규정은 여성들에게 어떤 보장도, 보호도 해주지 않았다. 그 규정은 '그래도 되는'유흥과 접대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주었을 뿐이다. 합법적 일이라면서 누구도 그 일을 하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유흥'과 '접객', 역사적 탐색[18)]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19)]

1. 성적 서비스로서 '유흥'과 '접객'의 등장

'유흥(遊興)'의 사전적 정의는 "흥겹게 놂"이다. 그러나 "유흥업소", "유흥접객원"이라는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 유흥은 주로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발표문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유흥'과 '접객'의 법적 계보를 탐색하고자 한다.

현재와 같은 유흥의 의미가 법령을 통해 공식화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경무총감부령 제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취체규칙(이하 예기규칙)과 제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이하 창기규칙)을 공포했고, 여기서 '유흥'이 등장했다. 예기규칙 제11호는 예기치옥(藝妓置屋) 영업자, 곧 예기(조선인 기생 포함)를 고용한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시했는데, 그중 6항이 "객을 유인하거나 유흥하게 하지 말 것"이었다. 창기규칙 제7조 역시 대좌부(貸座敷) 영업자, 곧 창기를 고용한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시했는데, 9항이 "통행인에 대해 유흥을 권유하지 말 것", 10항이 "학교 학생임을 알면서 그에게 유흥하게 하지 말 것"이었다. 또한 창기규칙 제22조는 창기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통행인에 대해 유흥을 권유하지 말 것"을 포함했다.

이렇듯 일제시기 경무총감부는 유흥을 남성의 쾌락이자 여성의 노동("營業" 또는 "稼")으로 정의했다. 창기가 제공한 유흥, 곧 성교는 원칙적으로는 학생에게 금지되었다. 제국경찰은 (학생이 아닌) 성인 남성이 화폐를 통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할 권리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풍속", 곧 공중도덕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예기규칙 제17조는 "경찰서장이 예기, 작부, 예기치옥 영업자에 대해 풍속 취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창기규칙 제30조는 "경찰서장이 대좌부 영업자 또는 창기에 대해 공중위생 풍속 취체, 그밖에 공식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흥이 초래할 수 있는 풍기 문란에 대한 단속은 또한, 예기, 작부, 창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했다. 예기규칙 제18조는 "경찰부장이 풍속 취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기 또는 작부의 거주 또는 예기치옥의 위치와 더불어 지역을 제한"할 수 있고, 제6조는 "예기 또는 작부가 1박 이상의 여행"을 하거나 "10일 이상 휴업"을 하

18) 미완의 원고입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9) parkjm@chungbuk.ac.kr

고자 할 때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창기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가혹했다. 창기규칙 제19조는 “대좌부 내(內)가 아니면 창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제20조는 “창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된 지역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손님(客), 곧 유흥을 구매하는 남성들에게는 어떤 제약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처럼 유흥으로 인한 도덕적 낙인은 유흥을 향유한 남성이 아니라, 오직 유흥을 제공한 여성들에게만 부착되었다.

창기, 예기, 작부의 노동이 예기치옥과 대좌부 영업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흥은 그것을 직접 제공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여성을 고용하고 장소를 제공한 업자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서비스 산업의 성격을 지녔다. 조선총독부는 “접객업”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것을 공식적인 직업 분류로 인정했다. 조선총독부가 1930년 실시한 국세조사(國勢調査), 곧 센서스의 직업 항목 중 하나가 “접객업 종사자”로, 대좌부(貸席業)와 예기치옥(置屋)의 업주, 예기, 창기 등이 포함되었다.[20] 1930년 경성부의 여성 직업 중 접객업 종사자는 가사사용인(5.3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3.06%), 상업(1.28%)이 그 뒤를 이었다(이송순, 2016: 400-401). 1930년대 예기와 더불어 카페 여급이라는 새로운 여성 “접객업 종사자”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박정미, 2011: 212-215), 이후 접객업이 빠르게 성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흥에 대한 식민 권력의 이중적 태도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더욱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한편으로 유흥의 산업적 측면, 특히 유흥업에 투자된 일본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고자 했다. 일례로 경찰은 중일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유흥 역시 “생업보국의 한 가지 방법”이므로 그것을 강제로 억압하기보다는 “민중의 자각”에 기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흥이 전시 특수로 인해 더욱 성업하자,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1939년 조선지나사변특별세령을 통해 유흥음식세를 신설했다. 과세대상은 요리점, 창기업, 여관 등으로, 음식 및 접객여성의 서비스 비용에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었다. 유흥음식세 신설로 세수가 급증하자, 조선총독부는 이듬해 조선유흥음식세령과 동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과세 대상을 카페와 바 등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유흥음식세 징세액은 1939년에서 1942년 사이 무려 11.8배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세금 중 유흥음식세의 비중은 1.6%에서 9.4%로 상승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이미 유흥업이 주요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박정애, 2009: 195-215).

2. “창기”에서 “접객부”로: 공창제 폐지와 ‘묵인-관리 체제’의 형성

해방 후 여성운동이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통과한 공창제도 등 폐지령은 1948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창기의 법적 지위가 폐지되고 성매매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공창제폐지령이 시행되기 약 열흘 전인 1948년 2월 3일 보건후

20) 접객업 종사자에 포함된 직종은 다음과 같다. 1) 여관업주, 하숙업주 2) 요리점, 음식점, 대석업, 치옥 업주 3) 여관, 요리점, 음식점, 대석업의 지배인(番頭), 호객꾼(客引) 4) 요리인 5) 예기(기생) 6)창기 7)여관, 하숙옥, 요리점, 음식점 등의 하녀(女中), 급사 8) 욕탕업주, 사용인 9) 이발사, 미용사(이송순, 2016: 400-401).

생부는 「접객부(기생, 작부, 여급) 영업 규례」를 발표했다. 이로써 일제시기 "접객업 종사자" 중 기생, 작부, 여급은 "접객부"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정부의 허가와 정기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일제시기의 지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공창제, 곧 성매매를 공인하고 창기를 등록, 검진하는 '공인-관리' 제도는 법률로써 폐지되었지만, 예기규칙, 곧 예기와 작부의 성매매를 묵인하고 그들을 등록, 검진하는 '묵인-관리' 제도는 예규의 형태로 존속한 것이다. 나는 식민지 '묵인-관리' 정책과 해방 후 금지정책의 결합을 '묵인-관리 체제'(toleration-regulation regime)로 개념화한 바 있다(박정미, 2011; Park, 2013; Park, 2019).

유흥의 정의 역시 일제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표적 유흥 관련 정책은 1948년 12월 사회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유흥영업 임시정지에 관한 건」으로, 동 예규는 유흥영업을 고급요정, 카페, 바로 정의했다(사회부장관·내무부장관, 1948). 공창제의 폐지로 창기의 성적 서비스는 유흥 범주에서 제외되었지만, 기생, 작부, 여급이 요정, 카페, 바에서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는 여전히 유흥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이 건은 유흥영업을 "임시정지"하기 위해 제정된 예규였다. 당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정부 수립 후에도 지속된 혼란과 극심한 빈부격차, 부패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그리고 무엇보다 여순 사건이 유흥영업 임시정지의 결정적 이유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시국이 다단하고 민생고가 심한 이때 어떤 사람은 고급요정에 미기(美技)를 끌어안고 주지육림을 이룬 가운데 흥청거리고 생을 즐기는 모습은 확실히 좋지 못한 사회상이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그림의 떡같이 그리고 물 건너 불같이 바라다만 보고 있는 세궁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다. 이에 우리들의 선량은 지난 번 여순사건 때 21차 본회의에서 고급요정의 폐쇄를 결의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실시해 내려왔던 것이다(『국도신문』, 1949년 11월 8일).

이 신문 기사는 당시 유흥의 지배적 관념이 "고급요정에 미기를 끌어안고 주지육림을 이룬"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순 사건과 제주 4·3 항쟁, 국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유흥영업 임시정지는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9년 2월 13일자 『동아일보』는 서울시에 등록된 기생 6백여 명 중 공식적으로 폐업한 이들은 백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백여 명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도했다. 그 중 상당수가 이른바 "무허가 영업", 곧 단골손님과 계약을 통해 "당국의 취체도 없고 위법도 아닌" "부잣집 안방"에 "출장"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조선일보』, 1949년 11월 8일; 『연합신문』, 1950년 3월 17일). 또 "무허가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는 업소들도 많았다(『동아일보』, 1949년 7월 7일).

한국 고위층 남성의 유흥을 향한 의지는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도 꺾지 못했다. 서울이 두 번이나 점령, 탈환되는 등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고 극심한 가뭄까지 겪은 1951년 초가을, 한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유사 이래의 대 한재(旱災)로 애타는 가슴과 주린 창자를 움켜지고 고투하는 이 땅 농민들의 피눈물 겨운 한소(旱騷)는 어디에서 풍겨오는 가을바람이냐 하는 듯이

> 고관대작의 매끈한 차와 지프차는 협착한 거리마다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장사진을 치고 있으며 (...) 주류 판매금지란 버젓한 표식은 공염불화 하여 붉은 얼굴들과 요염한 접대부들의 가무소리와 더불어 난무하는 꼴은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탄을 불금케 하고 있다(『대구매일신문』, 1951년 9월 12일).

정부도 "고관대작"의 이와 같은 작태가 국민 여론과 전쟁 수행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년 6개월, 전선이 교착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1951년 10월 12일, 국무회의는 「고급요정 및 유흥영업 임시 조치의 건」을 의결했다(총무처, 1951a). 이 건은 요리점, 카페, 바를 폐쇄하고 대중음식점으로 전업하게 하며, 음식과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접객부는 단순한 음식물 운반에 종사하는 외, 객을 상대로 권주, 가무, 음곡, 유희를" 금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치가 "외빈 상대 업태", 곧 "외국 빈객 접대상 필요한 특수요정 및 유흥영업"은 허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약 2개월 후인 1951년 12월 18일 보건부는 다시금 「고급요정 및 유흥업 폐지와 외국빈객 접대에 관한 건」을 결재하여 "국내적으로는 고급요정 및 유흥영업을 폐지한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목하 우리 한국은 민주 우방 각국이 참전 또는 물심양면의 원조를 하고 잇는[있는] 차제 거국적으로 최선의 환영과 접대를 요망할 단계에 있음으로" 고급요정 폐지와 외국빈객 접대 시설 설치가 상충하지 않음을 역설했다(총무처, 1951b). 이렇듯 한국 정부는 우방에게 유흥, 곧 한국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혈맹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접객부", "유흥영업종사자", "위생분야 종사자":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과 하위법령의 진화

유흥을 매개로 한 혈맹은 휴전 후에도 유지되었다. 유엔군이 장기 주둔하자 유엔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 일명 기지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1957년 7월 유엔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자 "유엔군 출입을 지정받은 접객업소"를 허가하고 '위안부'의 성병 통제에 집중했다(총무처, 1957). 정부는 이미 같은 해 2월에 전염병예방법과 동 시행령을 시행함으로써 성을 팔거나 팔 우려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기 성병 검진을 법제화했다. 정기 성병 검진 대상과 주기는 "접객부, 기타 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 1회, "땐사, 유흥업체의 여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 1회,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 2회였다. 이를 통해 당시 정부가 "접객", "유흥", "위안"을 사실상 "매음행위" 또는 "매음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 대인 서비스로 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어 공창제폐지령의 금지정책을 계승했지만, 성판매여성에 대한 성병 검진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1962년에는 1월에는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일제시기 예기규칙이 폐지되었다. 식품위생법 제정 이유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과 더불어 일제시기와 미군정기의 관련 법령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었다.[21] 군사정부는 "구악을 일소하고 구법령 정리사업을 최단 시일 내에 완수"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 직후부터 6개

월 동안 구일본법률과 미군정법령 등 총 400여 건을 정리했는데(김창록, 2002: 157; 최종고, 1991: 455-459), 그중 하나가 예기규칙이었다.

예기규칙은 식품위생법으로 대체되었지만, 유흥을 제공하는 여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은 "유흥영업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유흥영업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같은 해 10월 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유흥영업"을 "캬바레, 빠, 요리점"으로, 제14조는 "유흥영업종사자"를 "유흥영업소에서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가요 음곡 등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녀자(이하 접객부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렇듯 식품위생법은 "유흥영업종사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했으나, 그것은 사실상 일제시기 "접객업 종사자" 중 여성 직종, 그리고 미군정기 "접객부"와 동일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유흥영업종사자"를 "접객부"로 약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예기규칙이라는 "구법령"은 정리되었지만, 유흥이라는 "구악"은 일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부는 남성이 유흥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와 제16조는 "접객부"로 하여금 "등록신청서"(서식 제8호)를 작성하게 한 후 "등록증"(서식 제9호)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제22조와 제23조는 "접객부"에게 성병 검진을 비롯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25조는 그들이 정기진단을 충실히 받았음을 입증하도록 "보건증"(서식 제10호)을 소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림 1>은 등록증 서식으로, 보건증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하고 "보건증을 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 1>이 보여주듯, 등록증(보건증) 표면에는 여성의 성명과 영업소, 영업소재지, 업주명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본적과 주소, 사진과 같은 개인 정보가 기재되었다. 배면에는 이동상황과 건강진단필증이 기록되었다. 이동상황 기록은 "유흥영업종사자"의 이동이 빈번했다는 사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처럼 이동하는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가 권력의 의지를 보여준다. 건강진단필증 칸에는 진단을 받은 일자가 기록됨과 동시에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도장이 찍혔다. 또한 "본증을 상시휴대"할 것과 "건강진단 기일 내에 진단을 필하지 않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가 주의사항으로 명시되었다.

등록증과 보건증의 서식이 동일했다는 사실은 정기 성병 검진의 전제가 등록임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유흥영업종사자"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정기 성병 검진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등록, 곧 정부가 관리하는 명부에 "유흥영업종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그들이 정기 성병 검진을 받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했던 것이다.

---

21) ⑨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음식물기타식품취체규칙에 관한 건(1900년, 법률 제15호),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체규칙(1911년, 총령 제133호), 메칠알콜(목정)취체규칙(1912년, 총령 제121호), 청량음료수및빙설영업취체규칙(1911년, 총령 제134호), 료리옥, 음식점영업취체규칙(1916년, 경령 제2호), 주정음료의판매금지(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공설욕장및음식점의면허(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1940년, 총령 제114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취체규칙(1916년, 경령 제3호)을 각각 폐지함.

<그림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62년 10월 10일 시행) 등록증 서식

[別紙 第9號書式]

表面

本 籍

住 所

姓 名

年 月 日生

寫 眞

營業所名

所 在 地

業 主 名

年 月 日

(本 登錄證은 保健證을 併用함)

第 號

遊興營業從事者登錄證

(發行年月日)

年 月 日

特別市 區

[印]

道 市 郡

管 轄 保 健 所 [印]

背面

移動狀況	

健 康 診 斷 畢 證

定 期			臨 時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檢 印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主意事項

1. 本證은 常時携帶하여야 하며 他人에게 貸與 또는 讓渡할 수 없다.
2. 食品衛生監視員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何時라도 提示하여야 한다.
3. 本證은 健康診斷 期日內에 診斷을 畢하지 않을 때에는 無效로 한다.

그런데 1973년 2월 16일 식품위생법의 개정문은 “유흥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률 제20조는 등록 절차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유흥영업자와 종사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은 여전히 식품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유

지했을 뿐만 아니라, “위생강습”을 추가로 의무화했다(제21조).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9월 26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도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 신청, 등록증, 등록취소에 관한 조항(제16조, 제17조, 제20조)이 삭제되었다. 또한 “등록증”은 사라졌지만, “보건증”은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 필증”으로 대체되었다.

등록이 정기 성병 검진의 전제라고 본다면, 등록제를 폐지하면서 검진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법률이 폐지한 “등록제”가 등록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등록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모순은 쉽게 해결된다. 1973년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등록신청서에는 “등록인”(“유흥영업종사자”)은 물론 “보호인”(등록인의 법적 보호자)의 본적, 주소, 성명과 함께 등록인의 현재 직장과 과거 직장의 주소, 업소명, 업주명, 담당업무를 기재해야 했다. 또한 등록신청을 위해 건강진단서와 신원증명서도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이러한 양식이 철폐되자 “등록인”이 “보호인”을 설정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폐지되었다. 동시에 새로 도입된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 필증”에도 여전히 사진을 첨부하고 주소, 현재 업소명, 이동상황, 건강진단 내용을 기재해야 했다. 한 마디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등록제는 폐지되었지만, 등록 자체는 유지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기존의 등록제를 폐지했을까? 1973년 식품위생법 개정문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정황에 미루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해가 1973년이라는 사실은 단서를 제공한다. 1973년은 1960년대 후반부터 증가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정점에 달한 때로, ‘관광기생’이 급증하자 정부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들의 등록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해 위생강습이 의무화되었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기생’을 비롯한 “유흥영업종사자”의 위생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 했을 것이다.

이후에도 식품위생법과 하위법령은 몇 차례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등록증(보건증) 서식도 지속적으로 변모했다.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 필증(1973-1975), 건강진단증(1975-1984), 건강진단수첩(1984-1999), 건강진단결과서(1999-현재)가 그것이다. 증서 발급 대상자 명칭 역시 “유흥영업종사자”/“접객부”에서 1981년 “유흥접객부”로, 다시 1989년 “유흥접객원”으로 변모했다. 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 명칭도 달라졌다. 1957년 “접객부(접대부, 작부), 땐사, 여급,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에서 1969년 “특수업태부(땐사, 접대부, 기타 윤락행위를 하는 여자”로, 1978년 “특수업태부(특수유흥음식점 유흥종사자, 기타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여자), 접객부, 땐서”에서 1984년 기존 범주에다 “여관 또는 여인숙 영업에 종사하는 자, 안마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인삼찻집 또는 다방영업에 종사하는 자, 터키탕입욕보조자”를 추가한 “위생분야종사자”로 변모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유흥”과 “접객”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유흥영업종사자”의 약칭이 “접객부”였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양자의 차이를 식별하자면, 유흥은 남성의 쾌락을, 접객은 여성의 노동을 부각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유흥”이 “영업”과, “접객”이 “부(婦)”또는 “원(員)”과 결합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접객업”은 1963년 상법에 규정된 “공중접객

업"(극장, 여관, 음식점 등)에서처럼 "유흥"영업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주다. 그러므로 1981년 이래 정부가 "유흥접객부", "유흥접객원"처럼 접객부, 접객원 앞에 유흥을 덧붙인 것은 접객업의 하위범주로 유흥업, 곧 성산업을 더욱 분명히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성매매방지법 이후 '묵인-관리 체제'와 "유흥접객원"의 운명

1948년 공창제폐지령 이후 한국에서 성매매는 70년 이상 금지되었지만,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을 통해 성을 팔거나 팔 우려가 있는 여성들을 등록, 검진, 치료하는 관리정책이 사실상 금지정책을 압도해왔다. 그러나 2004년 여성운동의 주도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자, 과거 '묵인-관리 체제'로 봉합되어 있었던 금지정책과 관리정책의 모순이 더욱 첨예해졌다. 법 시행 이후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관리정책의 핵심 요소였던 등록과 검진이 위축된 것이다. 일례로 2006년 7월 주요 일간지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병 검진 등록 관리 대상자 수가 급감했음을 지적했다.

> 13일 질병관리본부의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 수 및 검진실적 2000~2005년' 보고서를 보면, 성병 전파 가능성 때문에 각 시·도가 정기 검진 등을 통해 등록 관리하는 여성은 2003년 15만8892명에서 지난 해 10만8403명으로 5만 명 가까이 줄었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 "특별법 이후 사법당국이 유흥가,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자 성매매 여성들이 주택가 등 다른 지역으로 숨어들면서 음성적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06년 7월 14일).

이 신문 기사를 통해 다시금 1973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등록 관리"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등록 관리가 위축되었다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논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즉각 「'성병관리제도'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매매금지'는 성병 예방의 해법」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반박했다.

> 성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성병의 원인 중 하나인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성매매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보다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성매매우려 여성에 대한 성병검진제도가 '성병 없는 안전한 성구매'를 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성구매자와 알선자가 관련된 '성매매 행위'가 아닌 '성매매 여성'을 성병의 진원지로 간주하거나 특정 업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6년 7월 14일).

미군정기부터 오랫동안 "접객부",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등에 대한 성병 검진이 성매매를 전제로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 등록 관리 대상자로서 정기 성병 검진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성매매라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등록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증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같은 맥락

에서 성병 검진 연인원, 곧 총 성병 검진 횟수 역시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급감했다. 2004년 약 280만 건이었던 성병검진연인원은 2005년 195만 건, 2010년 168만 건, 2018년 146만 건으로, 14년 간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보건복지부, 2019: 164-165).

그러나 동시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기 성병 검진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기 성병 검진의 근거법은 전염병예방법의 후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고, 검진 대상자와 주기는 과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계승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이하 건강진단규칙)에 명시되었다. 그에 따르면 "유흥접객원"과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의 경우 3개월에 1회 매독 및 기타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6개월에 1회 HIV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곧 일명 '티켓다방'의 종업원은 6개월에 1번 매독, 기타 성매개 감염병, HIV 검사를 받는다.[22] 성병 검진을 받은 여성들에게는 <그림 2>와 같은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된다.

<그림 2> 건강진단결과서 서식

※ 건강진단결과서 서식(예)

건강진단결과서

일련번호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본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 항목 및 주기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따릅니다.

면허번호 : 진단의사 :

발급일 : 년 월 일

기관명 :

○○○시 ○○구 ○○동 ○○번지

○○○) ○○○-○○○○ http://www.○○○.go.kr

검진 항목 및 결과

진단항목 \ 판정일	년월일			
매독				
임균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연성하감				
HIV				

비고	예시) 다음 내원일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월 일입니다.

- 규격 : A4용지를 1/2로 나누어 가로로 이용
- 각 기관 실정에 따라 위 서식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음
- 건강진단결과서 이면은 건강진단항목 및 회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지면으로 적극 활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0: 30

건강진단결과서 역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검진 결과를 기입한다는 점에서 <그림 1>의

2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1962년 등록증(보건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형식의 건강진단결과서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9년부터 발급되었다. 이처럼 정기 성병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실제로 검진이 2018년 기준 약 14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묵인-관리 체제'의 모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그렇다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관리정책이 전혀 변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0년부터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등록관리자 범주(곧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여자종업원, 숙박업종사자, 기타 성매개감염우려자)가 삭제되었고, "2010년부터 대상자 등록관리 안함"이라는 각주가 추가되었다. 여기서 다시금 의문이 제기된다. 정말 등록 자체가 폐지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검진 대상자를 식별하고 대상자에게 정기 성병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가? 질병관리본부의 『2010년 성병관리지침』은 등록 관리 폐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검진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여성 중심의 성병검진제도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특정직업의 여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성병검진제도의 지속유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진단하고, "그간 우리부 지침에 따라 시행해오던 등록관리제를 2010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명시한 후, "따라서, 성병관리사업실적표 서식에서 성병관리 건강진단 대상자 수는 삭제하고, 검진건수위주로 보고"할 것임을 표명했다(질병관리본부, 2009: 3-4).

앞으로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언급은 등록 자체의 폐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통계 보고 양식에서 대상자 수를 삭제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질병관리청은 성병 검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검진 기록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시스템(PHI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번 발표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묵인-관리 체제'가 약화되기는 했으나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묵인-관리 체제'와 함께 "유흥접객원"을 비롯한 정기 성병 검진 대상자의 범주도, 성병 검진의 의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여성운동은 어떤 주장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 성매매방지법이 엄존함에도 성매매를 묵인하는 "유흥접객원"과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등의 범주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또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가? 하루아침에 성산업을 일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상담과 지원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인가-

김유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이 토론회에서 제가 요청받은 것은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여성 피해를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담소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영역은 지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지침에 의거해 지원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단지 일회성 상담으로 그치지 않는데, 여타 여성폭력과 달리 성매매는 여러 폭력이 중첩되어 있고, 주변에 자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성매매 행위 자체가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한 방편이었기에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소 내방했을 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인생설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일은 여성아동권익지침에 나와 있는 지원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다보니, 때로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일인가. 우리는 여성의 일을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됩니다.

사 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료집에는 사례 내용을 싣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다보면 지원 기간과 금액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차이 너무도 심해서, 이러한 부분을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는 업주들이 선불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주를 통하거나 휴대폰 가개통, 브로커를 통한 작업대출을 받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상담소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업주들의 행태로 인해 여성들이 빚의 굴레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탈성매매를 한 후 당장 생계 해결이 안 되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법적인 한계와 자원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착취를 삭제하라

봄날(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와 22조에는 단란주점 과 유흥주점의 업소행태와 유흥주점에서 고용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그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성매매업소가 유흥업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흥업소의 업소운영형태와 유흥종사자고용이라는 법적인 명시는 곧 성매매를 합법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흥주점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권리는 누구에게 사용되는가를 따져 묻기 전에 유흥주점에서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한다. 그 역할은 결국은 자원이 없거나, 빈곤한 여성들로 인해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고용이 되는 유흥접객원이라 할지라도 주종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이 성매매집결지, 노래방도우미, 티켓다방,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유형과 별다른 차이점은 하나도 없다. 법적인 허가가 있는 업소라고 해서 여성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도 않고, 업소의 허가는 국가와 업주의 관계일 뿐 여성들에게는 성착취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식품위생법에서 호명한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아야한다. 보건증 발급은 다양한 직업군이 발급을 받지만, 유흥접객원은 성병검진대상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유흥주점에서 성병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보건증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매매경험당사네트워크 뭉치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누었다.

뭉치회원A: 업소에서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 여럿이 보건소로 갔는데 보건소 직원에게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 왔다고 하니 얼굴표정이 달라지면서 그 직원이 검사실도 아니고 직원들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 우리를 한꺼번에 몰아넣고는 긴 면봉 하나씩 받으라고 하면서 팬티만 벗고 면봉을 성기에 넣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화장실에서 하겠다고 하니 보건소직원이 바빠 죽겠는데 왔다 갔다 할 시간적인 여유가 어딨냐고 유난을 떤다고 하면서 업소에서는 다 벗고 있지 않냐며 같은 업소아가씨까리 뭘 가리냐며 면박을 줬어 그 수치심을 아직도 못 잊을 수가 없어

성병 검사하러 업주가 지정한 산부인과에 갔는데 진찰대 위에서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으니까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더니 의사가 한두 번 벌린 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어색하게 있냐고 한마디하고, 별 표정 없이 자연스럽게 있으면 역시~하면서 웃는거야 많이 해봤네 이거지 그리고 성병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성병을 옮기는 남자 때문인데도 몸으로 돈 버는 사람이 이렇게 관리하냐며 손님한테 성병 옮기면 가게 문 닫는다고 야단을 쳐, 의사가 업주도 아니면서.

뭉치회원B: 성매매집결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병검사를 했는데 아침에까지 영업을 하고, 손님을 보내야 하고 바쁘니까 홀복을 입고 보건소에 갔어. 남들이 보던지 말든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고,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러 오라며 시간까지 정해줘 성병 검사하는 날에는 혹시나 성병이 나올까봐 치약으로 밑을 씻는 언니들도 있었어. 성병이 나오면 영업을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통과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

그 외에도 보건증을 직접 만들러 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와서 여성들의 주민번호로 보건증을 만들어주면 성병검사를 할 때마다 보건증을 들고 보건소 검사실이 아닌 교회 공간 같은 넓은 곳에서 줄서서 검사받은 적도 있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성병검사는 유흥주점과 집결지, 티켓다방 등 업소의 유형에 따라 검사의 시기가 각각 달랐고, 성병검사를 하면서 받았던 수치심, 모멸감은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이 경험한 것이며 그로인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병검사를 왜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업소에서 일하려면 으레 지켜야하는 철칙이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칙이었다. 공무원들은 업소단속을 나오면서 보건증 단속도 했고, 검사기한을 넘긴 여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업주들도 있었다.

성병검사의 의미는 여성들의 몸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깨끗한 몸을 공급받는 자는 성구매자가 되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 여성들의 몸은 도구화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국어디서나 업소든 어플에서든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여성을 편하게 구매하며, 여성들의 공급이 어디서든 이루어진다. 여성의 공급을 공론화 해놓은 것이 식품위생법 유흥주점 접객원 조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조항으로 인해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성착취라는 폭력의 권력을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흥접객원 조항, 성병검사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말하겠지만 삭제를 해도 현재의 성착취 현장은 그대로 일 것이라는 입장도 대부분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를 넘어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요를 차단하고, 알선업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는 노르딕모델의 도입이 시급하다.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한 법적 검토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화하는 성매매 행위와 유형접객 행위와의 법률상 차이

	성매매범죄	유흥접객
근거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목적: 성매매 등 근절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식품위생법(시행령)** ➢ 목적: 식품위상생 위해 방지, 식품영양 질적 향상, 식품 정보제공, 국민보건의 증진
행위	• 불특정인 대상 • 재산상 이익을 수수 내지 이를 약속 •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유흥시설(무도장)을 두고 노래 내지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 시설 내에서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규제방식	• 성매매 금지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영업허가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금지(허가취소 등) •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른 성매매알선등 내지 음란행위 금지(3년 이하 징역 2·3천만원 이하 벌금)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서 본 유흥접객원 삭제 검토

▪ 성매매 묵인-관리체제의 핵심축인 유흥접객원 관리제도

• 박정미 교수가 보여주는 공창제에서 유흥접객 서비스로의 전환의 역사는 유흥접객원과 이를 고용하는 유흥영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제도가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하에서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하는 공식화된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알선업 관리 정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

- 일제시대부터 접객부를 둘 수 있는 유흥영업을 허용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풍속침해를 규제하는 관리방식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다만, 풍속침해로 규제되는 유흥의 범주에서 성적 서비스가 제외되는 범주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음
  → 현재에는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가 유흥접객 서비스 범주에서 금지되고 있음

• 그렇다면, 성매매범죄를 유흥접객 서비스 범주에서 제외하는 정책의 변화가 현재 법률상 보여지는 성매매와 유흥접객 서비스의 차이가 뒷받침하는가?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서 본 유흥접객원 삭제 검토

▪ 성매매와 유흥접객 서비스와의 연관성

• 성매매 대상이 되는 여성에 대한 관리체계로서 유흥접객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일제시기 〈예기규칙〉 상 기생, 작부, 여급 → 미군정 〈접객부 영업 규례〉 상 접객부 → 1962년 〈식품위생법〉 유흥영업종사자(접객부) → 1989년 〈식품위생법〉 유흥접객원
- 박정미 교수와 신박진영 정책팀장 모두 유흥접객원은 성매매 우려가 있는 부녀로 분류되어 정기성병검진을 비롯한 검강검진 등 보건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성병검진 등 관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티켓다방 종사자 및 안마시술소 안마사 포함)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서 본 유흥접객원 삭제 검토

- 유흥접객원 규정의 모순과 한국 반성매매 정책의 한계
  - 유흥접객원에 대한 허용 및 관리 정책과 반성매매정책 방향의 충돌
    - 유흥주점영업 및 유흥접객원에 대한 관리정책은 성매매여성 내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분류하고 관리(성병 등 관리)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성매매 합법화 정책에 해당
    - 성매매처벌법으로 표상되는 성매매금지주의 정책방향과 직접적으로 충돌
  -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반성매매 정책상 한계
    - 성매매금지주의 정책방향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이 반성매매 관련 법률상 금지대상을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로 제한하는 현재 한국의 반성매매 정책의 태도임 → 유흥주점영업(유흥접객원)만이 아닌 유사한 형태의 여성 서비스를 활용하는 풍속영업규제 정책의 한계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서 본 유흥접객원 삭제 근거

- 반성매매정책의 취지로 돌아가면,
  - 반성매매정책의 핵심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거래하는 사회질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을 착취하고 비인격화하는 위계적인 구조의 재생산을 근절하고 여성의 인간 존엄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
    - 그렇다면, 성기를 중심으로 한 성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성매매 정책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
  - 여성의 성적 대상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해악
    - 신박진영 정책팀장의 발제를 통해 확인된 해악은 1) 유흥주점 관련 성매매 피해상담의 높은 비율 및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여성의 성적 서비스의 경계가 유흥과 성매매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연속선상의 성적 서비스일 뿐이라는 점이 확인, 2) 여성의 유흥서비스 등 성적 서비스를 거래하는 현장에서 유흥접객원 여성들은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 피해만이 아니라 성폭력과 폭행에 지속적을 노출됨, 3) 유흥접객원의 합법화에도 불구, 성매매금지정책 하에서 사실상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하에서 쉽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그로 인해 접객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등 가중된 피해상황으로 내몰림 등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서 본 유흥접객원 삭제 근거

▪ 유흥접객원 규정 삭제의 필요

- 여성의 유흥서비스를 거래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유흥접객원의 법적 정의에서 이미 유흥접객원 규정 자체가 반성매매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
- 신박진영 정책팀장이 지적한 유흥접객원 합법화의 실질적 해악을 검토해보면, 1) 유흥접객원 여성이 제공하는 유흥서비스는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종류의 '일'로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를 합법화된 일의 영역으로 가져옴, 2) 유흥접객원 합법화의 효과가 유흥주점영업만이 아닌 유사영업에서 여성의 유흥서비스 거래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 3) 합법화된 영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의 대상이 되는 등 불법적인 성매매 확산에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가 발생
- 유흥접객원 규정의 내용 및 효과가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이상, 해당규정의 삭제는 반드시 필요함
  ← 성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의 비인격성과 착취적 속성을 고려할 때에 부녀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는 반성매매 정책을 실현할 수 없음

반성매매 정책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들

▪ 유흥접객원 규정 삭제만으로 충분치 않다

- 한국의 반성매매 정책이 여성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거래하고 착취하는 사회질서를 전환하는 방향을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
  - 성매매처벌법 등 반성매매 관련 법률이 성기 중심의 성적 서비스만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성적 대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다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성적 행위 일체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금지하는 방향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익수수 내지 이를 약속하는 등 거래행위와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 금지되는 성매매에 대한 규정의 변경을 통해 풍속영업에서 금지하는 성매매 행위를 확대함으로써 유흥주점 이외에 다른 영업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여성노동의 양적/질적 확대와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필요
  - 성별 불평등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여성들이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거래해야 하는 조건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성매매정책은 성평등한 노동정책과 함께 가야 함